

2019 정기총회 식순

- 총회의장 : 배춘환 (손잡고 공동대표)
- 사회 : 박래균 (손잡고 운영위원)

- 진행순서
 1. 개회선언
 2. 성원 보고
 3. 의장 인사말
 4. 2018년 손잡고 활동 보고
 5. 안건 상정 및 승인
 - 제1호 의안 : 2018년 회계·업무 감사보고와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2019년 예산·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임원·감사 선출 및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정관개정의 건
 - 제5호 의안 : 기타 의안
 6. 공지사향
 7. 폐회선언

- 목차 -

| | | |
|------------------------------|-----|----|
| 손잡고 4회 총회 식순 | --- | 1 |
| 손잡고 활동보고 | | |
| 1. 조직소개 | --- | 4 |
| 2. 활동목표 | --- | 5 |
| 3. 조직활동보고 | --- | 6 |
| 4. 전체사업표 | --- | 9 |
| 5. 주요활동보고 | --- | 11 |
| 6. 전체사업 평가 | --- | 36 |
| 7. 활동일지 | --- | 42 |
| 2018년 회계-업무감사 보고 | | |
| 1. 업무감사보고 | --- | 54 |
| 2. 회계감사보고 | --- | 55 |
| 총회 안건 상정 및 승인 | | |
| 1. 회계·업무감사 보고와 승인의 건 | --- | 61 |
| 2. 2019년 사업계획(안) 보고 및 승인의 건 | --- | 62 |
| 3. 2019년 예산(안) 보고 및 승인의 건 | --- | 65 |
| 4. 감사 및 임원선출 승인의 건 | --- | 66 |
| 5. 정관개정의 건 | --- | 67 |
| 6. 기타 안건 | --- | 68 |
| [부록1.] 손잡고 정관 | | |
| [부록2.] 20대국회에 제출한 노란봉투법 | | |
| [부록3.] 20대국회 제출한 괴롭힘소송금지 특례법 | | |



2018년 손잡고활동보고

1. 조직소개

1) 단체명 :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손잡고는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모임입니다. 2014년 2월 26일 시민사회 각계각층 550명의 제안자와 함께 출범했으며, 같은 해 4월 16일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습니다. 손잡고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업무방해죄 등 법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을 바꿔낼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노동자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이유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당사자들과 국가손해배상대응모임을 구성해 간사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운영조직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진은 2018년 4월 27일 개최한 제3회 손잡고 회원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손잡고의 회원은 CMS시스템 개편(2016. 7.

1) 이후 새로 후원회원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상임대표

•배춘환 : 회원대표, 2014노란봉투캠페인 제안자

- 운영위원(6인)

•박래균: 인권재단사람 부설 인권중심사람 소장

•박병우: 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실장

•송영섭: 변호사, 금속법률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윤지영: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감사

•업무감사 : 김도형(변호사)

•회계감사 : 박병학(회계사)

- 사무국 : 윤지선

- 회원 : 후원회원(일시후원포함) 265명

3) 활동위원회

손잡고는 활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활동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진상조사소위원회
- 손잡고기금심의위원회
- 손잡고법제도개선위원회
- 노동현장간담회참여단위 : 손배피해사업장 참여
 - 민주노총 지역본부 소속 : 동양시멘트지부, 부산합동양조 생탁, 울산과 학대학노조, 부천지역일반노조 원종복지관노조
 -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 갑을오토텍지회,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기아차사내하청분회, 보쉬전장지회, 상신브레이크지회, 쌍용자동차지부, 유성기업지회, 파인텍지회(스타케미칼), 하이디스지회,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AVO카본코리아지회, KEC지회, DKC지회
 - 보건의료노조 소속 : 고려수(금천수)요양병원지부
 - 언론노조 소속 : MBC본부
 - 공공운수노조 소속 : 경북대학교병원분회, 서라벌지회, 택시지부, 철도노조, 한국항공비정규직지부, KTX 승무지부
 - 서비스연맹 소속 : 택배노동조합

2. 활동목표

1) 목표

- 손잡고는 파업 및 노동쟁의를 사유로 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인해 임금, 퇴직금, 상여금, 집, 자동차, 통장이 모두 가압류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위기, 가족해체, 신용불량 및 파산,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이어지며 극단적 자살위기를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 생계·의료비 지원을 합니다.
- 손잡고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 문제에 대한 법률적 해소를 목적으로 손배가압류 청구의 요건과 범위를 강화하는 법개정 활동을 비롯해 손배가압류의 심각성을 알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2) 2018년 주요과제

“손잡고, 맞잡은 손의 온기가 현장에 닿도록”

- 입법활동 : 손배가압류 관련법 개정을 위한 활동
- 모금활동 : 손배가압류 관련 사회적 모금운동
- 지원활동 : 손배가압류 피해자 및 노동현장 지원활동
- 의제활동 : 손배가압류 관련 사회적 의제화(기고, 교육, 토론회, 공청회 등)
- 감시활동 : 손배가압류 현황조사 및 사례 기록
- 캠페인활동 :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에 대한 여론형성(공연, 전시, 1인시위 등)
- 회원활동 : 회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 회원배가운동
- 사무처 근무환경 개선 및 사무국 구성 확대

3. 조직 활동보고

1) 운영위원회 활동

- ① 주요활동 내용 : 2018년 운영위는 조직정비, 기획 및 사업 승인, 활동위원회 구성, 손배소가압류 문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손잡고 자체모금활동 기획 및 승인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② 2018년도 정기 운영위원회의 : 9차례 진행

- 2018.1.31. [운영회의] 손잡고 제20차 운영위원회 회의
- 2018.2.23. [운영회의] 손잡고 제21차 운영위원회 회의
- 2018.3.12. [운영회의] 손잡고 제22차 운영위원회 회의
- 2018.4.17. [운영회의] 손잡고 제23차 운영위원 회의
- 2018.6.13. [운영회의] 손잡고 상반기 사업기획회의 + 제24차 운영회의
- 2018.8.14. [운영회의] 손잡고 제25차 운영위원 회의
- 2018.9.28. [운영회의] 손잡고 제26차 운영위원회 회의
- 2018.11.13. [운영회의] 손잡고 제27차 운영위원회 회의
- 2018.12.13. [운영회의] 손잡고 제28차 운영위원회 회의

③ 각 운영위원 담당활동 구분 : 손잡고의 운영에 있어 계획된 활동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운영구조와 재원확보방안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때까지 사무국 구성을 1인 활동가 체제로 둘 수밖에 없는 한계 등을 고려해 각 운영위원은 활동 계획에 따라 분야별 담당을 맡아 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운영위원은 사업 시행 과정을 정기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공유합니다. 담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무국 담당 : 박병우 운영위원
- 모금·캠페인, 국회사업 담당 : 박래군 운영위원
- 노동현장 담당 : 이남신, 윤지영 운영위원
- 법제도개선활동 담당 : 송영섭, 윤지영 운영위원
- 회원 담당 : 박래군, 안진걸 운영위원

2) 손잡고 운영위원회 진상조사소위원회 : 2016년 4월 25일 ~

① 손잡고 제1회 총회결과(2016.04.25.)에서 “2기에서 TF를 구성할 예정이며, 회비 및 증빙서류에 대한 이관이 마무리된 후 회비에 대한 결산 및 감사보고를 홈페이지 및 메일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할 것임을 약속”하고, TF담당 운영위원으로 박래군(위원장), 박병우, 윤지영 3인을 선임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②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잡고 1기 출범(2014. 2. 24.) 후 현재까지 발생한 손잡고 활동가에 대한 제반 인권 및 노동권 침해 현황을 규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
- 손잡고 1기 출범(2014. 2. 24.) 후 현재까지 발생한 평화박물관과 손잡고 사이의 운영 문제를 규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
- 위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다시는 활동가에 대한 인권과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③ 2018년도 활동경과 : 2018년도는 평화박물관 측이 회비를 돌려주길 거부하면서 시작된 ‘회비반환소송’, 한홍구 전 운영위원이 손잡고와 진상조사소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두 건의 소송을 치렀습니다. 회비

반환소송에 이어 한홍구 전 운영위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적분쟁이 손잡고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끝까지 손잡고를 믿고 지지해주신 회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회비반환소송 : 2017년 1심 법원은 손잡고의 주장대로 회비는 손잡고의 것이며, 활동가도 손잡고에 소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비를 반환할 것과 평화박물관 사업 기금으로 유용한 손잡고의 회비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같은해 12월 열린 강제조정결정과 2018년 7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도 한홍구 전 운영위원과 평화박물관의 주장은 전면적으로 부인되고, 손잡고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손해배상소송 : 회비반환소송이 종결된 직후 2017년 10월, 한홍구 전 운영위원이 손잡고진상조사소위원회들이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로 인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손잡고와 진상조사소위원회 3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소가 8천만원). 2018년에 재판이 시작되었고, 1심 선고가 11월 16일에 있었습니다. 확정된 1심 선고의 판결 내용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들이 작성한 진상조사 보고서 <‘손잡고’ 활동가 부당해고 사건 조사결과 보고와 제언>의 내용은 모두 사실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한홍구 교수)의 청구 이유를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피고 3인(손잡고 운영위원인 박래균, 박병우, 윤지영)이 작성한 보고서도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2월 10일 항소 포기로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3) 사무국 구성

- ① 사무공간 이전 : 2017년 4월부터 < 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의 공간지원을 받아 1층에 사무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 ② 활동가 : 재정적 사유로 증원없이 1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운영위원진과 상의하여 필요시 활동가 요청에 따라 단기로 활동보조인력을 채용합니다. 급여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활동가 급여도 인상했습니다(기본급 8만5천원 인상). 손잡고 단기인건비 시급은 ‘최저임금1만원’을 실천합니다.

4. 2018년 전체사업

표-2018 손잡고 활동정리표

| 항목구분 | 사업내용 | | 시기 | 비고 |
|--------------|---------------------------|----------------|-----------------|--|
| 모금활동 | CMS-회원배가활동 | | 수시 | 회원 265명 |
| | 해피빈재단 기부금 모집 | | 2018.1~ | |
| | KB손해보험노동조합 기금체결 | | 2018.6.11 | '공생을 위한 후원 계약' |
| 법제도개선 활동 | 국가손배 대응모임 (간사단체 참여) | 기자회견, 성명 | 수시 | 간담회 3회 / 기자회견 4회 / 성명 3회 |
| | | 회의 | 수시 | 괴롭힘소송금지특례법 발의/ 강정, 세월호 1건 등 강제조정/ 16차~23차 회의진행 |
| | 법제도개선사업 | | 수시 |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활동 간담회, 기자회견, 토론회 참여 등 |
| | 손잡고논평 | | 수시 | 9건 |
| | 노동현장간담회 | | 월1회 | 29차~37차 회의 진행 |
| |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 | 2018.4~2018.9 | 연례사업 |
| 문화기획 | 연극<노란봉투> 국회공연 | | 2018.1.29 | 입법을 위한 국회특별공연 |
| | 영상제작 | | 2018.6.8 | 국가폭력알림 영상제작 |
| 학술연구 | 손배피해기록 | | 10회 | KEC 손배압류일지 기획/ 그 외 9개 노동현장 손배가압류피해기록 진행 |
| | 손배실태조사 | | 2018.4~12 | 국가인권위 사업비 후원/ 손잡고, 고려대김승섭교수팀, 와락과 공동사업 진행/발표는 2019년 1월진행 |
| | 토론회 | | 2018.7.18. | 원종복지관 손배청구 사건 토론회 |
| 지원활동 | 성심수녀원 지원연계 (장학금, 보육비) | | 수시 | 고등학생 5명, 영유아 5명 |
| 연대활동 | 노동현장실무지원 | | 요청 시 | 손잡고노동현장 실무연대 |
| | 연대사업 | 공동 기자회견, 성명 | 요청 시 | 손배관련 외 노동현장, 시민단체 등 연대 |
| | | 대책위 참여 등 | | |
| <의자놀이그만> 캠페인 | | 2018.4 | 쌍용차해고자복직 시민프로젝트 | |
| 언론활동 | 손배가압류 관련 기고 | | 수시 | 12건 |
| | 손배관련 언론기획 | | 수시 | 7건 |
| 회원활동 | 제3회 회원총회 | | 2018.4.27 | 연례사업 |

| | | | | |
|----|---------------|---------|--------------|--|
| | 영화 '사수' 공동상영회 | | 2018.12.27 | 회원송년회 겸으로 진행, 7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진행 |
| | 손잡고 편지 | | 수시 | 5건 |
| | 뉴스레터 <손깍지> | | 2018.12.14.~ | 월 정기 뉴스레터 발행 |
| 기타 | 운영회의 | | 정기 | 20차~28차 진행 |
| | 진상조사소위원회 | 시민사회간담회 | 2018.1~6 | 5회 진행 |
| | | 소송 | 수시 | 회비반환소송 2018.7.11. 2심승소종결 손배소 2018.11.16. 1심승소종결 |
| | 홈페이지 개편 | | 2018.8~12. | |

5. 주요활동 보고

■ 모금활동

회원 후원 | 지난 1년, 손잡고를 후원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8년 손잡고와 손을 잡아주신 회원여러분 덕에 더 많은 시민들과 손배가압류 노동현장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2018년도 회원여러분이 손 놓지 않고 함께 해주신 덕분에 꾸준히 법제도개선활동, 현장지원활동 등 손잡고의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자발적인 후원가입도 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7명의 회원이 더 늘어 총 265명의 회원이 손잡고와 함께 합니다. 2019년은 더 많은 시민들이 손잡고를 알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도 회원배가에 동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 : <http://sonjabgo.org/content/997>)

2018년 손잡고와 손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 | | | | | | | | | |
|-----|-----|-------|-----|-----|-----|-----|-----|-----|-----|
| 강버들 | 강성덕 | 강세웅 | 강인수 | 강정숙 | 강태웅 | 곽동표 | 곽승규 | 구교인 | 구두회 |
| 권경희 | 권미영 | 권일 | 권주용 | 권태훈 | 길래현 | 김강학 | 김경동 | 김경래 | 김경훈 |
| 김경희 | 김규성 | 김금주 | 김남수 | 김남오 | 김대용 | 김동수 | 김동원 | 김동필 | 김득중 |
| 김명옥 | 김미란 | 김미숙 | 김미영 | 김상구 | 김상용 | 김상은 | 김성원 | 김성진 | 김세진 |
| 김소리 | 김수경 | 김수희 | 김숙연 | 김아리 | 김연경 | 김연우 | 김영민 | 김영숙 | 김영재 |
| 김옥경 | 김옥길 | 김우 | 김윤미 | 김윤수 | 김은실 | 김은아 | 김은희 | 김이종 | 김점숙 |
| 김정근 | 김정운 | 김종원 | 김종채 | 김지방 | 김지숙 | 김진경 | 김진이 | 김창선 | 김채빈 |
| 김현정 | 김혜인 | 김호규 | 김호정 | 노미선 | 노영숙 | 노현아 | 류성훈 | 문근숙 | 문기주 |
| 문연수 | 문종찬 | 민현수 | 박경은 | 박근용 | 박다정 | 박래균 | 박민 | 박민규 | 박배균 |
| 박병우 | 박상근 | 박석운 | 박선유 | 박성호 | 박소연 | 박영희 | 박재필 | 박정만 | 박정희 |
| 박정희 | 박정희 | 박종길 | 박채은 | 박철민 | 박태규 | 박태현 | 박혜진 | 박희송 | 박희영 |
| 박희정 | 배지훈 | 배춘환 | 백영화 | 변영학 | 변정운 | 서민식 | 서진숙 | 서찬욱 | 서한나 |
| 석권호 | 선혜란 | 성심수도회 | 성지민 | 송경숙 | 송규영 | 송복남 | 신세민 | 신정웅 | 신희영 |
| 심우성 | 심춘복 | 심희준 | 안성희 | 안순호 | 안영철 | 안진걸 | 엄기정 | 엄소현 | 오소영 |
| 오춘상 | 원동석 | 유애리 | 유연석 | 유현웅 | 육춘영 | 윤여철 | 윤인중 | 윤지선 | 윤지영 |
| 은수미 | 이갑호 | 이건민 | 이경숙 | 이근탁 | 이기찬 | 이남국 | 이남신 | 이달별 | 이대희 |
| 이덕희 | 이도훈 | 이동철 | 이미옥 | 이보미 | 이상민 | 이서영 | 이선아 | 이선주 | 이설희 |
| 이성곤 | 이성하 | 이수호 | 이순옥 | 이승근 | 이승한 | 이승훈 | 이애자 | 이양구 | 이용석 |
| 이우경 | 이운서 | 이윤주 | 이은미 | 이인용 | 이재형 | 이정연 | 이정현 | 이조은 | 이종호 |
| 이종희 | 이지연 | 이진아 | 이찬용 | 이창근 | 이창석 | 이충호 | 이태호 | 이해영 | 이현욱 |
| 이현진 | 이효건 | 익명 1인 | 임미선 | 장동엽 | 장석우 | 장인숙 | 장지선 | 전경호 | 전형진 |

| | | | | | | | | | |
|-----|-----|-----|-----|-----|----------|-----|-----|-----|-----|
| 정수경 | 정애리 | 정우민 | 정준효 | 정현주 | 정홍조 | 조경애 | 조기선 | 조동희 | 조미선 |
| 조민혁 | 조선희 | 조승희 | 조은하 | 조철호 | 주윤아 | 주재완 | 지민선 | 진기숙 | 차진각 |
| 차형근 | 최명희 | 최보민 | 최상하 | 최수미 | 최여울 | 최영호 | 최용규 | 최용근 | 최은배 |
| 최은비 | 최의왕 | 최인혁 | 최전돈 | 최정운 | 최종진 | 최창수 | 탁선호 | 하나 | 하성환 |
| 하해성 | 한봉희 | 한상훈 | 한재홍 | 함점순 | 허경훈 | 허종석 | 허지웅 | 헌승건 | 홍성일 |
| 홍영표 | 황경순 | 황규태 | 황은숙 | 황정인 | (총 265명) | | | | |

단체 후원1. | 일상으로 돌아간 손잡고 노동현장의 연대!

회원여러분의 후원 외에도 손잡고 활동이 꾸준히 유지되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노동기본권을 위태롭게 하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손잡고의 활동 취지에 공감하는 노동조합들이 2018년에도 꾸준히 손내밀어 주었습니다.

먼저, 손배가압류와 장기투쟁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간 노동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사연입니다.



▲ 상신브레이크지회



▲ 갑을오토텍지회

2월에는 상신브레이크지회 복직 노동자들이 손잡고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창조건설팅에 의한 노조파괴로 2010년부터 해고, 형사처벌, 손배가압류 등 갖은 고초를 겪은 바 있는 해고노동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입니다. 남은 해고노동자 5명 가운데 4명이 2017년 부당해고 대법원 승소를 해 복직을 했는데요, 그동안 함께해준 손잡고에 연대의 마음과 함께 승소로 받은 금액 가운데 일부를 보내주셨습니다.

11월에는 갑을오토텍지회에서 손잡고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역시 QP시나리오라는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저질러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자들이 장기간 투쟁을 해야 했고, 그 결과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손해배상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게 된 노동자들이 잊지 않고 손잡고에 연대기금을 보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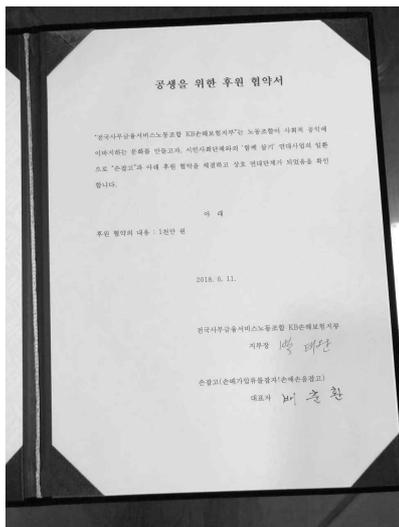
이처럼 수년 만에 이룬 값진 투쟁의 성과를 잊지 않고 손잡고에 나누어 주신 노동자들의 마음에 셈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와 고통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시민으로서 다양한 연대 활동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하며, 손잡고도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단체 후원2. | 손잡고활동의 든든한 버팀목 노동조합!

뜻밖의 연대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손잡고 활동의 특성상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현장이 아니면 단체의 활동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손잡고 노동현장이 아닌 곳에서 손잡고를 기금체결 노동단체로 선정했다는 연락을 주었습니다. 바로 KB손해보험노동조합입니다.



▲ 협약식



▲ 협약서

‘공생을 위한 후원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시민사회단체 가운데 단 세 곳을 선정해 기금 체결을 했는데, 손잡고와 반올림, 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노동권 보호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체들과 나란히 할 수 있어서 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더 많은 노동조합이 손잡고의 활동을

알고 연대할 수 있도록 올해는 활동도 열심히, 홍보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 법제도개선 활동

노동현장간담회 | 입법활동의 중심, '손잡고 노동현장'



▲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손잡고는 노동현장간담회를 통해 매달 1회 노동현장 재판상황, 손배가압류 피해 조합원 실태 등을 공유합니다. 손배가압류 문제는 '소통'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피해를 드러내지 않으면 아예 알려지지 않거나, 알려진다 하더라도 노동이슈에서 뒤로 밀려 주요의제로 채택되지 못하기도 해 벌어지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2018년은 총 9차례 노동현장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각 노조의 재판상황과 투쟁경과를 듣고, 각 노동현장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활동을 지원 합니다. 2018년에도 선고 전 성명서 또는 탄원서 조직, 기자회견 등을 노동현장과 함께 기획했습니다.

매달 열리는 정기간담회 외에도, 입법활동을 위한 국회면담과 국정감사기간 국회질의 등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2018년 노동현장간담회]

2018.1.17.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제29차 회의

2018.2.20.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제30차 회의

- 2018.3.15.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제31차 회의
- 2018.5.9.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제32차 회의
- 2018.6.26.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제33차 회의
- 2018.7.17.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제34차 회의
- 2019.9.11.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제35차 회의
- 2018.10.4.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제36차 회의
- 2018.11.6.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제37차 회의

모의법정 | 이번엔, 국가손배! 예비 법조인 12팀, 열띤 변론의 현장!



▲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손잡고의 자랑,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인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제4회 대회를 2018년에도 예비법조인들과 노동현장의 뜨거운 호응 속에 치렀습니다. 이번에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손잡고와 공동주관을 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공동주최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2017년 해피빈재단을 통해 전달받은 SKT노동조합의 후원기금이 활용되었습니다. SKT노동조합에도 거듭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제4회 대회의 주제는 ‘파업과 집회에 대한 국가손배’입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 2012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2015년 세월호 진상규명 촛불 집회 등 파업과 집회에 대해 경찰이 제기한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이 출제배경이 됐습니다. 총 12팀의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참여해, 8팀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노동권,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행사와 그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두고 ‘정당성’과 ‘책임’에 대해 변론을 펼칩니다.

본 대회 심사위원은 법조계, 학계, 노동계 추천으로 선정되는데요, 이번에는 권영국 변호사가 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고윤덕 변호사, 김태욱 변호사, 박은정 교수(인제대), 최석환 교수(명지대), 최은배 변호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본 대회 재판장을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대회 강평에서 “변호사는 기본권 옹호 사명이 있다”며 “국가와 기본권이 충돌할 때 변호사는 기본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판례를 해석해서 적재적소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 판례를 벗어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과 시도를 한 팀에 가산점이 부여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수상인 국회의장상은 참가번호 4011번팀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이다솜, 최경진, 임인영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재판부로부터 ‘기존 판례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한 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인영 씨는 수상소감에서 “실제 집회나 파업 현장을 찾으며 내가 아는 노동법이 이게 맞는 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며 “대회참여를 통해 노동법 현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약자와 연대하는 삼을 지향하는 법조인이 될 것”이라며 포부도 더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노동현장 뿐 아니라 제1회 경연대회 수상자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예비’ 법조인에서 변호사가 되어 참석한 것인데요, 신하나 변호사와 조미연 변호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일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예비 법조인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회 참가자 가운데 미래 노동법 전문가들이 더욱 더 많이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손잡고도 전국 로스쿨의 예비법조인들이 노동법에 관심 갖고 본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 함께한 사람들]

- 주최 : 손잡고,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후원 : 해피빈재단-SKT노동조합(사업비), 국회의장(시상), 법무부장관(시상)
-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집행위원회 소개
 - 집행위원장 : 송영섭(손잡고 운영위원/ 금속노조법률원장)
 - 집행위원 : 배춘환, 박래군, 박병우, 안진걸, 윤지영, 이남신, 양현아(서울대 교수)
 - 간사 : 김영중(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윤지선(손잡고)

- 문제출제위원 : 권오성(교수/성신여대), 서선영(변호사/민변), 장석우(변호사/민주노총법률원)
- 재판부 : 권영국(재판장/변호사), 고윤덕(변호사/민변), 김태욱(변호사/민주노총법률원), 박은정(교수/인제대), 최석환(교수/명지대), 최은배(변호사,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 수상자]

- 국회의장상 4011번 고려대학교 로스쿨팀 이다솜, 최경진, 임인영
- 법무부장관상 4002번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팀 곽온별, 민수정, 이예지
-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장상 4004번 서울대학교 로스쿨팀 배지연, 범유경, 명재연 / 4012번 서울대학교 로스쿨팀 양진모, 김민영, 남수진
- 노란봉투법상 4001번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팀 박래현, 조정민, 박진훈 / 4005번 전남대학교 로스쿨팀 곽한, 주상은, 박민원 / 4006번 충남대학교 로스쿨팀 지종엽, 진시연, 김준영

국가손배대응모임 | 괴롭힘소송금지특례법 발의! 세월호 손배 1건 종결!

국가손배대응모임은 노동권이나 집회·시위와 같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제기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2017년 5월 11일, 쌍용자동차 지부가 국가손배 피해당사자 단체 및 개인들에게 ‘함께 대응하자’며 손을 내밀었으며, 손잡고는 모임에 간사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괴롭힘소송 금지법 20대국회 발의(대표발의 박주민)



▲ 세월호 4.18 손배소 1건 조정

2017년 12월,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청구한 구상권청구가 법원 조정결정으로 정리되며, 국가손배사건은 경찰이 제기한 사건들만 남게 되었습니다(2008년 광우병춧불집회에 대한 손배 1건, 2009년 쌍용자동차지부 정리하고 파업에 대한 손배 1건,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여자에 대한 손배 1건, 2015년 세월호 집회에 대한 손배 2건, 2015년 민중총궐기에 대한 손배 1건).

이에 2018년 국가손배대응모임은 소제기주체이자 소송수행청이기도 한 경찰청과, 소송대리인이자 소송관련 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손배 배상 철회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함께 5월, 경찰청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고, 이후 세월호 집회에 대한 손배소 2건 중 '4.18집회'건이 법원조정결정을 통해 종결되었습니다. 이어 쌍용차 노동자들과 함께 경찰청 관계자 면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면담을 진행했으나, 아쉽게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손배가압류는 여전히 철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희망버스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정을 거부하면서 결국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경찰이 제기한 손배 부문에서는 승소했지만, 집회 사회를 본 '송경동 시인'에 대한 경찰개인이 제기한 손배 부분은 법원이 인정했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이 되면서 약 4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모순되게도, 희망버스를 두고 송경동 시인 등 참여 시민들에게 댓글공작 등 공권력을 앞세워 탄압을 한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은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측의 불법을 확인했음에도, 국가는 손배소를 철회하지 않았고, 사법부는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입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은 '괴롭힘소송금지법'을 발의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괴롭힘소송'은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에게 국가나 기업이 기본권을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해당 법안은 긴 논의 끝에 2018년 10월,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법안내용 첨부자료 확인).

[2018년 국가손배대응모임 활동] : 2017.5.11. 손잡고 간사단체 공식 참여

* 국가손배대응모임 참여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 투쟁본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생명평화결사, 유성기업 범시민 대책위원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

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등 총 29개 단체

* 국가손배대응모임 : 16차~23차 회의진행

- 2018.1.19. 제16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8.2.21. 제17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8.3.27. 제18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8.4.11. 제19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8.5.16. 제20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8.6.5. 제21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8.6.11. 제22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8.9.5. 제23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제도개선 활동 : 입법활동, 서면질의, 면담 등

- 2018.1.12. '괴롭히기소송 제한법안' 회의-국회방문 면담
- 2018.7.18.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질의서 제출
- 2018.5.2. '세월호 유가족 - 경찰청 면담'
- 2018.7.6. "시민사회단체대표단,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만나 쌍용차사태 등 적극적 해결 요청" 보도자료 배포

* 기자회견 토론회 등

- 2018.5.2. <기자회견> '2015년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경찰은 세월호 가족과 시민에 대한 '괴롭힘소송' 즉각 멈추라"
- 2018.7.16. <기자회견> '이명박 경찰청' 희망버스 댓글공작 고발 및 여론조작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
- 2018.8.21. <기자회견> 희망버스 국가손배소 2심 선고 규탄 기자회견
- 2018.8.22. <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공동논평
- 2018.9.6. <공동성명>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 2018.10.4. <기자회견> "기본권행사 가로막는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 발의 기자회견

■ 문화기획

손잡고연극제 | 연극 '노란봉투', 국회에 가다

제1회 손잡고연극제 창작물, 연극 <노란봉투>가 2018년에는 국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018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강병원, 김병관, 박광운, 박정, 박주민, 유은혜, 이학영, 진선미, 최인호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공동주최로 나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국회특별공연으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연극'이 공연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루만에 무대 설치와 음향, 조명, jtbc 소셜라이브와의 협업까지 가능하게 한 건 전인철연출팀과 배우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 연극 <노란봉투> 국회공연

노란봉투캠페인 일환으로 진행된 2014년 초연이후 사실상 매년 공연을 하게 된 것도 매우 뜻 깊었습니다. 같은 배우들이 매 공연마다 각기 스케줄을 조정해 가며 연극에 참여해주는 등 공연에 많은 애정과 연대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극 마지막 '고공농성에 오르는 병로를 응원하기 위해 지지방문하는 노동조합' 카메오가 등장하는데, 이번 국회공연에는 쌍용자동차지부에서 김정욱 사무국장이 참여했습니다.

의원회관 대회의실은 500석 규모인데, 평일 늦은 시각에 열린 공연임에도 350석 가까이 좌석을 채웠습니다. 공연을 시민들과 함께 관람한 이학영, 강병원,

박주민 의원이 박래군 운영위원의 사회로 관객과의 대화까지 이어갔습니다. 연극을 통해 손배가압류 문제의 심각성에 더욱 공감할 수 있었다며, ‘노란봉투법’과 ‘괴롭힘소송방지법’ 입법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 학술연구 활동

손배피해기록 | 맞잡은 손의 온기가 현장에 닿도록!



▲ 유성기업지회 재판참관



▲ 울산과학대학 가처분 현장방문

2018, 손잡고 슬로건 “맞잡은 손의 온기가 현장에 닿도록!”에 가장 걸맞는 활동이 바로 ‘손배피해기록’ 활동이 아닐까요? 손잡고는 매월 노동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장소, 시간, 노조 규모의 한계 등으로 간담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또, 막 손배청구나 가압류를 제기받고 자문을 얻고자 하는 현장들도 있습니다. ‘손잡고’는 현장이 부르면 언제, 어디든 달려갑니다.

2018년 한 해도 기회가 닿는대로 현장 손배당사자들을 방문해 손배가압류로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한 증언을 듣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사자가 허락한 경우 기록의 일부는 ‘인터뷰’형태로 기고되기도 합니다. 기록이 기고되지 않더라도, 손잡고의 다른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더 많은 현장에서 손잡고를 찾을 수 있도록 활동을 더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금 되새깁니다.

[2018년 손배피해기록-피해당사자면담]

총 10회 : 현장방문인터뷰 진행

- 2018.1.5. 하이디스지회 이상목 지회장 면담 및 피해기록
- 2018.2.8.-10. KEC지회 현장방문 및 피해기록
- 2018.4.23. 원종복지관 손배 당사자 면담 및 피해기록
- 2018.5.16. 유성 산재 소송 참관 및 도성대 유성기업아산지회장 인터뷰
- 2018.5.24. 금속노조 포항지부 DKC지회 방문 및 인터뷰
- 2018.6.5. 원종복지관 손배피해자 면담 및 피해기록
- 2018.9.17. 서라벌지회 손배당사자 면담 및 피해기록
- 2018.9.20. 울산과학대학 손배피해자 면담 및 피해기록
- 2018.10.12.-13. 전주택시 고공농성현장 방문 및 손배 피해자 면담
- 2018.12.21.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방문 및 피해기록

손배실태조사 | 노동자의 삶에 손배가 주는 피해를 숫자로 볼 수 있을까?

2018년 4월, 손잡고는 쌍용자동차지부와 심리치유센터 와락의 소개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김승섭 교수팀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국가폭력과 관련해 ‘국가폭력이 해고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한 바 있는 연구팀인데, 2018년에 국가폭력을 경험한 노동자의 아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이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배가압류’를 두고 ‘노동자의 삶에 손배가 주는 피해를 숫자로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튀어나왔습니다. 김승섭 교수팀의 답은 ‘할 수 있다’였습니다.



▲ 국가인권위-와락 공동협력사업 체결



▲ 김승섭 연구팀, 손잡고, 시사IN 실무회의

손배가압류 관련해 피해증언은 많았는데, 그때마다 손잡고로 ‘실태조사’나 ‘전수조사’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언론과 학계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ILO와 같은 국제기구에 피해를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치화된 실태조사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손잡고는 2017년 손배현황발표를 하며, 정부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구안에 담아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지금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태조사를 우리가 직접 해보자’는, 어쩌면 발상의 전환과도 같은 제안을 받은 셈입니다.

곧바로 김승섭 교수팀과 논의해 연구계획과 설문지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자금은 심리치유센터 와락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업신청해 지원받았습니다. 손잡고는 설문지를 들고 손배가압류피해당사자를 만나는 역할과 이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에서 11월까지 236명의 손배가압류피해당사자를 만났습니다.

236명의 손배가압류피해당사자는 금속노조 소속으로 쟁의행위를 했다가 손배가압류를 당한 당사자들입니다. 현재도 금속노조 소속인 노동자들도 있고, 노조 탈퇴를 했거나 노조가 깨져 현재 금속노조 소속이 아닌 노동자들도 있고, 퇴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손잡고에도 이번 실태조사는 매우 큰 의미입니다. 현재 피해를 입고있는 당사자, 노동조합 간부 외에 평조합원, 해고자, 희망퇴직자, 자발적 퇴사자 등 이렇게 많은 당사자들을 일일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건 상 현재 가장 많은 손배가압류 사업장이 속해있는 금속노조를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후에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밑거름이 되어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전수조사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2018년 손배실태조사-236명 설문지 작성 및 면담]

<회의>

- 2018.4.13. 손배소 트라우마연구 사전회의
- 2018.5.8. 손배소 트라우마 연구 실무회의
- 2018.5.23.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2차회의
- 2018.5.28.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3차회의
- 2018.11.30. 연구팀-손잡고 점검회의

<현장방문>

- 2018.7.16.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충청지역 노동자
- 2018.7.20.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충청지역 노동자
- 2018.7.20.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충청지역 노동자
- 2018.7.24.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충청지역 노동자
- 2018.7.25.-7.28.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경북지역 노동자
- 2018.7.30.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경기지역 노동자
- 2018.8.7.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충청지역 노동자
- 2018.9.13.-14.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경남지역 노동자
- 2018.9.17.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경북지역 노동자
- 2018.9.19.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경남지역 노동자
- 2018.9.20.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경남지역 노동자
- 2018.10.15.-18.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경기지역 노동자
- 2018.10.24.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경북지역 노동자
- 2018.10.25.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경남지역 노동자
- 2018.10.25.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경남지역 노동자
- 2018.11.8.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경기지역 노동자
- 2018.11.16.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경북지역 노동자
- 2018.11.16.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경북지역 노동자
- 2018.11.29.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서울지역 노동자

토론회 | '취직 후 아이계획'을 묻는 상사, 문제제기하면 손배청구!

2018년 7월 18일, 손잡고는 원종복지관 사태 3년을 돌아보고, 국가인권위에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천원종복지관대책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면접 볼 때 기혼인 여성노동자를 향해 '취직 후 아이 계획'을 물었던 상사가 둘째를 가진 해당 노동자 앞에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야 해'라는 폭언을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원종복지관입니다. 복지관 측은 문제제기하고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조력한 죄'로 유일하게 함께 목소리를 낸 비정규직노동자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 1인시위, 심지어 SNS 공유까지 문

제삼으며, 공론화를 이유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배소 등 민형사상 소송을 30여 건을 제기했습니다.

당사자는 출산 후 복귀했지만 폭언한 상사와 한 공간에 배치되어 지속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다 과도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원종복지관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부인하며,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편에 선 비정규직노동자는 계약해지되었고, 이후 사건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되어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구제를 받고자 민원신청을 했지만,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무성의한 기각결정이 산재승인신청과 민형사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두 노동자의 심리적-물질적 고통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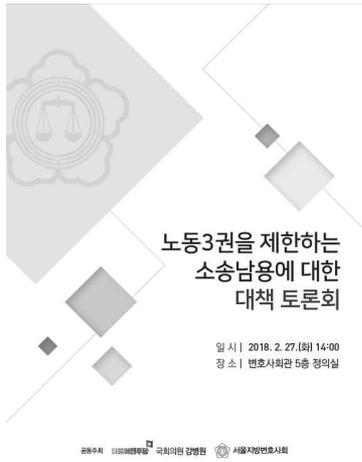
▲ 원종복지관 토론회 포스터



▲ 토론회 현장

토론회 후 대책위와 토론회 참가단체는 토론회 내용을 인권위 측에 알리고, 시민사회와 연대해 ‘괴롭힘 소송’을 끝내기 위한 활동들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개최한 ‘법안 토론회’에도 참여했습니다. 2018년 2월 27일 열린 “노동3권을 제한하는 소송남용에 대한 대책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 손잡고에서는 송영섭, 윤지영 두 운영위원이 각각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후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자료집 이미지



▲ 토론회 현장

■ 피해 지원 활동

지원연계 | 성심수녀회와 손잡고!

2018년도 성심수녀회의 연대를 받아 피해노동자 가구에 학비지원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심수녀회는 2015년 첫 만남 이후 매년 손잡고와 연계해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손잡고는 내부 논의를 거쳐 손배피해 가구 가운데 노란봉투캠페인 지원을 받지 못했던 노동현장과 현재 압류가 진행 중인 당사자 가운데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대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성심수녀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은 5가구에 학비지원을, 5가구에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심수녀회 마들렌 소피센터 교육비(보육비) 신청서

| | | | | |
|-------------|------|-----|------|------|
| 1. 성명 | | | | |
| 2. 생년월일 | | 성별 | | |
| 3. 본적 | | | | |
| 4. 주소 (보호자) | | 연락처 | | |
| 5. 가족사항 | | | | |
| 관계 | 성명 | 연령 | 직업 |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 통장 | 계좌번호 | 은행: | 계좌주: | |

본인은 귀 재단의 교육비 지원자가 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 연서로 이에 신청 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자 : _____

보호자 : _____

재단법인 성심수녀회 소피센터 귀중

■ 연대 활동

노동현장연대 | 2018, 노동적폐청산을 위해 손잡고!

2018년 손잡고는 ‘노동현장실무지원’에 좀 더 집중적으로 힘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바로 ‘적폐청산’ 때문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각 기관별 적폐청산을 위해 설치한 TF들이 각기 2년의 활동을 마감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손잡고 노동현장들과 관련있는 적폐청산위원회는 크게 세 군데입니다. 경찰청 내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 고용노동부 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검찰 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입니다.



▲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 MBC스트레이트 노조파괴, 국가폭력 문건 폭로 보도

먼저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는 2009년 점거파업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국가폭력, 그리고 2012년 대한문 앞에서 벌어진 국가폭력 등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2009년 강제진압에서 저항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24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고, 퇴직금과 부동산을 9년동안 가압류 당한 상황에서 국가폭력 피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9년 만에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노동자들은 다시금 지난 국가폭력의 피해를 떠올려야 하는 상황에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6월, 조사받은 후 김주중 조합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손잡고는 짧은 시간 10년의 기록을 정리해 국가폭력을 증명해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쌍용차지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조사기간 실무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노조파괴문건과 국

가폭력 자료를 정리하는 등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8월 28일, 쌍용차사태를 두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명박 청와대’ 지시에 의한 국가폭력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경찰청장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도자료로 냈지만, 해가 바뀌도록 제대로된 권고이행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대다수 손배가압류 노동현장이 쟁의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법파견’, ‘노조무력화시도(노조파괴)’ 건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손배가압류 자체는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위원회의 조사가 중요한 것은, 조사 대상에 포함된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오랜기간 손배가압류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현재 여전히 법원에 계류 중인 손배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조사위원회가 각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권고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 차원의 입장이나 이행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손잡고는 조사위원회의 백서 내용을 가지고 각 노동현장과 함께 국회 질의, 고용노동부 질의서 등을 작성해 전달하는 등 실무지원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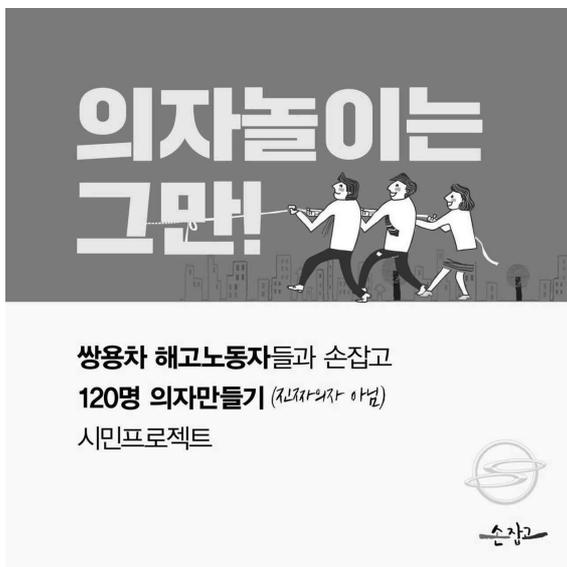
▲ 대검찰청 앞 규탄 기자회견



▲ 검찰 직권남용/직무유기 5대의혹제기 기자간담회

검찰개혁위원회는 노동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유성기업 노조파괴 관련 사건을 과거사조사 우선조사대상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유성기업지회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조속한 조사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지

나 돌연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던 위원회 측은 이후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거사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지난 후에야 검찰이 기소를 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직무유기 등은 엄연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지회에서는 항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위는 유일한 노동사건인 유성기업 사건을 제외하면서, 결국 노동사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캠페인 지원



▲ 탄원서 조직



▲ 비정규직 100인대표단 기자회견



▲ 청와대 면담요청서 전달

이 외에도 손배 피해 노동현장의 요청에 따라 현장 상황에 대한 기고나, 성명, 탄원, 위원회 참여 등 연대활동을 했습니다. 각 노동현장별 창립기념일, 후원주점, 송년행사 등 기쁜 일에도, 장례, 열사대책위, 추모문화제 등 슬픈 일에도

여건이 닿는 한 함께 하기 위해 부지런히 연대했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남은 것은, 아직 손잡고가 1인 활동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동현장과 연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에는 더 많은 노동현장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연대가 있길 바랍니다.

[손잡고논평] 논평 9건

- 2018.4.19. 유성기업 유시영 출소에 부처 노조파괴 사업장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논평 “사업주 솜방망이 처벌로는 노조파괴를 멈출 수 없다”
- 2018.6.27. ‘국가손배.국가폭력 피해 쌍용차 해고노동자 죽음에 대한 입장문’ “누가 해고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나”
- 2018.7.11. 노동자에 대한 유성기업의 괴롭힘 소송을 규탄하는 논평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이 노동자에 가하는 ‘보복성 손배소송’을 전면조사하라”
- 2018.8.20. 양승태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기밀자료 유출 관련 논평 “양승태 대법원의 ‘노동3권’ 거래는 헌법유린이다”
- 2018.8.23. 창조컨설팅 심종두, 김주목 형사판결에 대한 논평 “노조파괴시나리오도 유죄다, 유성기업은 범죄를 중단하라!”
- 2018.8.28. 쌍용차 사태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대한 논평 “이명박 청와대 지시, 쌍용차사태 책임자 ‘국가’는 국가손배 즉각 철회하라”
- 2018.10.4.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 환영한다”
- 2018.12.3. 경찰청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의 ‘노조 책임전가’ 발언에 대한 규탄 논평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
- 2018.12.10. 세계인권선언 탄생 70년,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논평 “정부는 노동권 실현을 위해 결단하라!”

[공동성명] 8건

- 2018.3.28. SBS 뉴스토리 작가 일방해고 규탄 성명 “SBS는 불공정 관행을 멈추고, 해고된 작가들에게 사죄하라!”
- 2018.4.5. “반인권적 무노조 신화 삼성은 각성하라!”
- 2018.4.26.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인 인권은 말뿐인가? 실망만 안겨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분노한다”
- 2018.6.12. “기아자동차는 여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강제 전적을 중단하라!”
- 2018.6.26. “기아차 여성 비정규직은 동네북이 아니다! 여성비정규직들이 일하던 곳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라!”
- 2018.10.16.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발령 즉각 철회하라!”
- 2018.12.14.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유성노동자들에 대한 악의적 보도행태 즉각

중단하라!”

- 2018.12.21. “비극의 기록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파인텍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기자회견(손배현장 관련)] 15건

- 2018.1.11. 하이디스지회 명예훼손 손배소 2심 기각 촉구 기자회견
- 2018.2.21. 쌍용차해고자복지 투쟁선포 기자회견
- 2018.3.28. “검찰의 보복조사 검찰은 과연 달라졌는가”
- 2018.5.30.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 2018.7.3. 쌍용자동차 故김주중 조합원 분향소 설치 기자회견
- 2018.7.12.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극우 세력은 쌍용자동차 분향소에 대한 폭력·모욕행위를 중단하고 경찰은 이를 방관하지 말라!”
- 2018.8.7. 쌍용차범대위 기자회견 “쌍용차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10대 요구사항”
- 2018.8.10. “노조파괴 사업장 유성기업의 손배청구는 보복행위다. 평택지원은 즉각 기각하라!”
- 2018.8.28.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쌍용차 진압 보고서 발표에 따른 쌍용차지부-범국민대책위 입장발표”
- 2018.8.30. 쌍용자동차지부 가족대책위-경찰청 면담 기자회견
- 2018.8.31. “기아자동차는 파업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법원판결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2018.10.4. 유성기업 해고노동자 해고무효소송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 2018.10.17. “현대차 재벌과 국가권력이 자행한 ‘유성기업 노조파괴’ 이제 모두가 나서서 끝내야 합니다!”
- 2018.12.3.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2018.12.4. “유성기업 노조파괴 8년! 제3의 협력자 편파적 공권력 사용한 경찰은 사과하라!”

[기자회견(손배사건 외)] 13건

- 2018.1.14. 스타플렉스 해고노동자 문제해결 촉구 및 75m 굴뚝농성자 건강 및 인권상황 보고 기자회견
- 2018.3.6. 동국대학교 청소노동자 해고 37일차! 사태해결촉구 노동인권시민단체 합동기자회견
- 2018.3.8. 동국대학교 청소노동자 투쟁 삭발식 및 기자회견
- 2018.4.9. “삼성 노조파괴 음모에 대한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 촉구” 기자회견
- 2018.4.25. “황전원, 이동곤 사퇴 / 세월호 가족과 안산시민 모욕하는 자유한국당 혐오정치 중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2018.5.29. “제주 베트남 어업이주노동자 폭행사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촉구를 위한 동시다발 기자회견”
- 2018.8.22. 금천수요양병원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 2018.9.6.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과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 2018.11.28. “한국잡월드와 고용노동부는 잡월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 2018.12.6. 파인텍 박준호, 흥기탁 굴뚝농성 390일! “408일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끝장투쟁 선포 기자회견
- 2018.12.11.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 100인과 만납시다” 기자회견
- 2018.12.18. “24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님의 유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과 직접 만납시다!”
- 2018.12.18. 박준호, 흥기탁 굴뚝농성 ‘408일을 넘길 순 없습니다’ 제사회단체 대표자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및 투쟁계획 선포 기자회견

시민사회연대 | 시민사회와 손잡고!



▲ 시민 파인텍 하루조합원 총회



▲ 인권재단사람 후원의 밤

손잡고는 손배가압류 현안 뿐 아니라, 손잡고에 연대 요청의 손길을 요청하는 다양한 사안들에도 가능한 연대의 손을 꼭 맞잡고자 노력했습니다. 손잡고 역시 많은 시민단체들에 손배가압류 문제해결과 손잡고 노동현장 사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로 자주 연대요청을 합니다.

[2018년 손잡고 시민사회 연대]

- 2018.1.3. 시민사회연대회의 신년하례회
- 2018.2.14. KTX 승무지부 기금전달

- 2018.3.9.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18차 정기총회
- 2018.3.16. KTX승무지부 연대의 밤
- 2018.4.12. <지엠범대위> 지엠횡포저지 및 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식
- 2018.5.12. 세월호 참사 피해증언대회
- 2018.5.12. 4.16재단 출범식
- 2018.5.15. "세월호참사를 통해 본 언론보도의 문제점" 피해증언대회 참석
- 2018.5.19. 광주5,18 노동자결의대회 및 망월동 묘역 방문
- 2018.6.6. <추모제> 박래전열사 30주기 추모식
- 2018.6.8.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촛불문화제
- 2018.9.14.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 연명
- 2018.11.15. 인권재단사람 후원의 밤
- 2018.12.19. 민주시민언론상 시상식 참석

■ 기고활동

손잡고는 노동현장의 상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구성원들이 언론기고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각 기사는 손잡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손잡고 기고활동]

* 기고 : 12건

- 2018.3.21. 뉴스토마토 "쌍차 김득중 지부장의 네 번째 단식"(박래군 위원)
- 2018.4.9. 오마이뉴스 "쌍용자동차 사장님, 세 아이 엄마인 저는 무섭습니다"
- 2018.4.10. 오마이뉴스 "29명 죽은 10년의 고통,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 2018.4.11. 오마이뉴스 "쌍용차, 이제는 노동자와 함께 살아가는 길 택해주세요"
- 2018.4.12. 오마이뉴스 "'쌍용차 전원 복직'은 모든 시민과 한 약속입니다"
- 2018.4.13. 오마이뉴스 "해고자들이 만든 티볼리로 '함께 사는 세상' 누비고 싶습니다"
- 2018.4.20. 오마이뉴스 "소처럼 차를 끄는 노동자들... 사장님이 끝내야 합니다"
- 2018.4.23. 오마이뉴스 "강산도 10년이면 변하는데, 해고자 고통은 '여전'합니다"
- 2018.4.26. 오마이뉴스 "고객 위한 '청춘예찬' 페스티벌? 해고자의 '청춘'도 보듬어주세요"
- 2018.5.17. 오마이뉴스 "죽은 동료의 산재승인을 취소하려는 회사"
- 2018.9.3. 오마이뉴스 "'현장 노동자와 함께하는 법률가' 꿈꾸는 예비법조인"
- 2018.12.5. 뉴스토마토 (박래군의 인권이야기)노동탄압에 나서는 정부를 걱정한다

■ 회원활동

제3회 회원총회 | 손잡고, 맞잡은 손의 온기가 현장에 닿도록

손잡고는 2018년 4월 27일,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1년을 돌아보고 2018년 한 해 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3회 회원총회는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인선' 총회였습니다. 배춘환 상임대표를 비롯해 박래군, 박병우, 송영섭, 안진걸, 윤지영, 이남신 등 6인의 운영위원이 다시금 손배가압류 문제가 해결되도록 힘을 보탤 것을 결의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슬로건을 “손잡고, 맞잡은 손의 온기가 현장에 닿도록!”으로 정하고, 기존 법개정운동과 더불어 현장과 밀착해 당사자의 상황과 목소리를 더 많은 시민여러분에게 알리겠다는 목표도 다졌습니다.



▲ 총회 현장



▲ 손잡고 편지, 노동현장에 전달

영화상영회 | 다큐 “사수” 공동상영회와 손잡고 회원송년회

2018년 12월 27일, 유성노동자들의 투쟁을 다룬 영화 ‘사수’ 시민단체회원 공동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손잡고와 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인권재단사람, 전태일재단,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참여했습니다.

영화 <사수>는 2016년 돌아가신 한광호 열사의 형제인 국석호 조합원과 그의 동료인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주인공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벌써 다수의 인디영화제 초청으로 관객들을 만났고, 최근에는 2018 서울독립영화제 '새로운 시선'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개입

한 폭력,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시나리오'에 맞서 8년 째 투쟁하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품입니다.



▲ 다큐 사수 관객과의 대화



▲ 응원편지, 현장모금액, 노동현장에 전달

공동상영회는 무료관람으로 진행했으며, 영화에 대한 감동후불제를 실시했습니다. 각 단체 회원들 115명이 신청했습니다. 관객과의 대화가 끝난 후 모금함에 72만3천원이 모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화를 함께 본 각 단체 회원분들이 손수 써주신 유성지회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편지 26통을 모아 유성지회 김성민 사무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관객과의 대화는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했습니다. 당일 아쉽게도 일정이 맞지 않아 참석하지 못한 회원분들을 위해 중계영상을 뉴스레터로 공유했습니다.

공동상영회가 끝난 뒤 유성기업지회 노동자들과 손잡고 회원들은 따로 모여 뒤풀이검 회원송년회를 함께 했습니다.

뉴스레터 | 정기 뉴스레터 “손각지” 발행



2018년 12월 14일, 손잡고 정기 뉴스레터 “손각지” 1호를 발행했습니다. “손각지”는 회원여러분과 손잡고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손잡고 회원이 아닌 시민여러분에게 손잡고 활동을 정기적으로 알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손각지” 이름은 ‘공모’를 통해 정했습니다. 이서영 회원님이 정해진 “각지”에 손잡고의 ‘손’을 붙여 지었습니다. “손각지” 이미지는 활동가가 직접 그렸습니다. 매달 나오는 “손각지”에 많은 애정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6. 전체 활동 평가

1) 2018년 사업계획 수행 결과

① 입법활동

- 지난 총회 보고내용 : “2018년은 ‘노란봉투법’ 입법활동을 포함해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법개정 활동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

- 수행 결과

• 노란봉투법 : 아쉽게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크게 진전이 없었습니다. 상임위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노조법 개정안, 특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단 한차례도 논의된 바 없습니다. 2018년에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1월 문화기획으로 연극 <노란봉투>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이후 국정감사 질의를 준비하는 등 수차례 국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제대로 성과를 맺지 못했습니다.

• 괴롭힘소송금지 특례법 : 손잡고가 간사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손배대응모임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에게 국가 또는 기업이 제기하는 손해배상가압류 등 민사소송을 ‘괴롭힘소송’으로 명명하고 이를 금지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10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괴롭힘소송방지 특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안소송 전, 소송이 기본권을 제약하는 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해, 특례법에 의해 손해배상가압류 등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기타 소취하 관련 : 국가손배대응모임의 활동으로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가압류 사건 가운데 두 건(강정마을 구상권청구, 세월호 4.18집회 건)에 대해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소취하의 형태가 아닌 점에 아쉬움이 있지만, 실제 금액이 집행되는 형태는 아니어서 실질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② 모금활동

- 지난 총회 보고내용 : “안정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회원배가활동을 전개할 계획”, “<뉴스펀딩>을 하반기 시작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모금 목표 : 5천만원 / 사용계획 : 법제도개선활동, 피해지원활동)”

- 수행 결과

• 회원배가운동 : 2018년은 전년도대비 회원이 7명 늘었습니다. 배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했으나, 평화박물관 측과의 회비반환소송 항소심, 한흥구 전 운영위원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등이 이어지며, 회원배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승소로 끝난 만큼, 2019년에는 적극적으로 회원배가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 뉴스펀딩 : 2018년에는 <뉴스펀딩>이 무산되었습니다. 원래 계획하고 있던 카카오토리가 더 이상 운영되지 않게 된 영향도 있고, 열사 등 노동현장들의 긴급한 개별현안, 국가폭력진상조사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의 개혁위원회 진행 등 각 발생하는 현안들에 밀리는 등 시점, 내부인력을 고려할 때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 KB손해보험노동조합 기금체결 및 손잡고 참여 노동조합 연대기금 : 계획된 모금기획은 아니지만, 손잡고의 활동에 공감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연대기금을 기부받았습니다. KB손해보험노동조합, 복직한 상신브레이크지회, 노조파괴 투쟁에서 승리하고 현장에 복귀한 갑을오토텍지회에서 손잡고에 후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지원 덕분에 2018년 한 해 큰 손실없이 손잡고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③ 지원활동

- 지난 총회 보고내용 : “2018년도 손배피해노동현장에 연대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 “성심수녀회와 같이 손잡고를 통해 피해가구에 직접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나 조직은 노동현장과 논의해 연계할 것”

- 수행 결과

• 노동현장실무지원 : 2018년도는 ‘손잡고 노동현장’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실무지원활동을 펼쳤습니다. 국가폭력 진상규명 대응을 위한 실무진에 참여해 노조 파괴 문건을 분석하고, 2009년 경기경찰청의 국가폭력 관련 문건을 분석해 쌍용차지부와 함께 진상조사위에 제출했습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자료정리와 언론 모니터링 활동, KEC 손배당사자 손배가압류 피해에 대한 언론기획, 원종복지관 손배 피해노동자 실무지원 등 노동현장의 요청에 따라 활동가가 노동현장을 방문해 손배가압류 문제를 알리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를 노조와 함께 수행했습니다.

• 성심수녀원 연계 : 2018년도 성심수녀원에서 장학금과 보육비 지원 연계사업을 제안해주었습니다.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가정을 연계해 5명의 고등학생과 5명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④ 의제활동

- 지난 총회 보고내용 : “노동현장간담회, 법제도개선위원회 등 활동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추진할 계획”, “민주노총 등 손배피해노동조합의 상급단체와 협의해 권역별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 “운영위원과 활동가가 적극 나서 기고와 홍보활동을 펼칠 것”

- 수행 결과

• 노동현장간담회와 공동활동 : 2018년에도 손배소 노동현장의 참여로 8차례 노동현장간담회를 수행했습니다. 노동현장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하거나, 노동현장이 처한 주요 의제를 시민사회로 확대해 시민사회 공동주최 기자회견으로 확장하는 등의 활동도 이어나갔습니다.

• 권역별간담회 : 손배가압류가 가장 많은 민주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권역별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계획했으나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에는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언론활동 : 2018년에는 손배가압류와 관련해 12건의 기고를 했습니다. 기고

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손배가압류 노동현장 상황을 알리기 위해 자료제작을 시도했습니다. 손잡고에서 노동현장 상황을 정리해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고 현장과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각 언론사 기자들이 적극 호응해 실제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⑤ 감시활동

- 지난 총회 보고내용 : “2018년에도 양대노총과 함께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을 집계해 발표할 계획”

- 수행 결과 : 2018년은 손배가압류 현황을 집계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 내에 집계해 양대노총과 조율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⑥ 캠페인활동

- 지난 총회 보고내용 :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제3회 손잡고 연극제”, “‘전시기획’” 등 준비

- 수행 결과 :

•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손잡고와 공동주관을 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공동주최로 참여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2017년 해피빈재단을 통해 전달받은 SKT노동조합의 후원기금이 활용되었습니다. 제4회 대회의 주제는 ‘파업과 집회에 대한 국가손배’입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 2012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2015년 세월호 진상규명 촛불집회 등 파업과 집회에 대해 경찰이 제기한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이 출제배경이 됐습니다. 총 12팀의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참여해, 8팀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시상후원으로 최우수상에는 국회의장상, 우수상에는 법무부장관상을 수여할 수 있었습니다.

• 손잡고연극제 : 제3회 손잡고 연극제는 사업공모가 되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아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018년 1월에 연극 <노란봉투>를 국회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문화기획을 통해 손배가압류를 알린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

했습니다. 본 공연은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관람 및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500석 규모의 국회대회의실에서 실제 ‘연극’이 무대에 오른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JTBC 소셜스토리를 통해 중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배가압류에 대해 알릴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 전시기획 : 201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전시를 기획해보고자 했으나 시점과 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⑦ 학술연구활동

- 지난 총회 보고내용 : “피해노동자를 만나 손배가압류 피해를 기록”, “2018년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현장을 대상으로 사회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

- 수행 결과 :

- 손배피해기록 : 2018년 임금압류 2년차를 맞이하는 KEC 손배피해 노동자들을 만나 개별구술을 듣고, 이를 오마이뉴스에 기고로 올렸습니다. KEC 외에 8개의 현장을 방문해 손배가압류 관련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 손배실태조사 : 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김승섭 교수 연구팀과 함께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손잡고는 연구설계 과정에서 자문의 역할과 함께 실제 노동현장 피해당사자들을 만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역할을 맡아 수행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흩어져있는 236명의 손배가압류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해당 연구결과는 2019년 1월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상반기 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⑧ 회원활동

- 지난 총회 보고내용 : “총회, 송년회, 손잡고 편지 등 회원활동 수행”

- 수행 결과 : 2018년 공식적으로 회원행사로 준비한 사업은 정기총회 외에 연말 회원상영회입니다. 손배소 노동현장인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다룬 다큐 <사수>를 회원분들과 함께 관람했습니다. 관람 이후에는 조출하지만 뒤풀이로 송년회도 겸했습니다. 단체규모가 작아 상영회는 참여연대, 민변노동위, 천주교인권위, 민

주연론시민연합 등 다른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손배노동현장 사안을 많은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외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회원뉴스레터 차원으로 발송했던 ‘손잡고 편지’를 다듬어, 더 많은 소식을 정기적으로 회원과 시민여러분께 알릴 수 있도록 손잡고 뉴스레터 ‘손각지’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손각지’는 매일 발행하며, 손잡고편지 외에 노동현장소식, 사업소식, 후원 및 재정보고 등으로 구성합니다.

2) 총평

손잡고는 2018년에도 본연의 목표인 법제도개선활동과 더불어, 피해노동현장에 좀 더 밀착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손배피해를 기록하고, 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국가손배나 기업이 제기한 손배 등 개별손배사건들이 종결될 수 있도록 단일사건을 중심으로 관련기관을 면담하거나, 기자회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표면상 국회공연과 모의법정을 제외하고 사업성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2018년 준비한 노력들이 2019년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금활동은 당초 계획보다는 저조했지만, 노동조합의 연대기금과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제안 등으로 재정부담을 나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진상조사소위원회 역시 총회에서 약속한 ‘1기 손잡고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재정 및 운영상의 문제’를 끝맺음하기 위한 활동도 계속해나갔습니다. 평화박물관과의 회비반환소송과 한홍구 전 운영위원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소가 8천만원)에서 모두 손잡고가 승소하며 2018년 두 건의 소송을 모두 종결했습니다.

다만 올해도 사무국 구성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임금인상을 하는 등 활동가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1인 활동가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각 운영위원이 책임과 역할을 분담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 활동목표에 따라 실행된 분야별 활동은 사업별 기획 취지와 기대효과를 대체로 충족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몇 가지 활동은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로 부득이 계획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7. 2018년 활동일지

- 2018.1.3. [연대활동] 시민사회연대회의 신년하례회
- 2018.1.3. [현장지원활동]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청와대 앞 1인시위 참여
- 2018.1.3.-1.8. [현장지원활동] 하이디스지회 명예훼손 손배소 2심 제출 탄원서
- 2018.1.4. [홍보활동] 손배가압류 언론취재 기획회의
- 2018.1.5. [학술연구] <손배피해기록> 하이디스지회 이상목 지회장 면담 및 피해기록
- 2018.1.7. [현장지원활동] KEC지회 손배 임금압류일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 여성이 가장 먼저 내쳐졌다”
- 2018.1.11. [법제도개선활동] <손배소 기자회견> 하이디스지회 명예훼손 손배소 2심 기각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노동3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손배청구 기각하라
- 2018.1.11. [현장지원활동] 하이디스지회 명예훼손 손배소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법원 제출
- 2018.1.12. [문화기획] 연극 ‘노란봉투’ 국회공연 사전리허설 및 더민주을지로위원회 면담
- 2018.1.12.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괴롭히기소송 제한법안’ 회의-국회 방문
- 2018.1.14. [연대활동] <공동기자회견> 스타플렉스 해고노동자 문제해결 촉구 및 75m 굴뚝농성자 건강 및 인권상황 보고 기자회견
- 2018.1.17. [진상조사소위원회] 손잡고 진상조사소위원회-시민사회 간담회
- 2018.1.17. [법제도개선활동] <노동현장간담회>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제29차 회의
- 2018.1.19.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제16차 회의
- 2018.1.19. [진상조사소위원회] 손잡고 진상조사소위원회-시민사회 간담회
- 2018.1.19. [현장지원활동] 재판참관 하이디스지회 명예훼손 손배소 2심 선고
- 2018.1.10.-25. [지원활동] 성심수녀원 장학금지원 연계
- 2018.1.29. [문화기획] 연극 ‘노란봉투’ 국회공연 본공연
- 2018.1.31. [진상조사소위원회] “평화박물관 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2018.1.31. [운영회의] 손잡고 제20차 운영위원회 회의
- 2018.1.31. [현장지원활동]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고공농성 탄원서 실무지원
- 2018.2.2. [모금활동] 4.9통일평화재단 일곱 번째 동행 사업보고완료
- 2018.2.3. [문화기획] jtbc 소셜스토리, 연극 <노란봉투> 중계
- 2018.2.7. [연대활동] <1인시위> 파인텍지회 고공농성지지 스타플렉스 본사 앞 1인시위

- 2018.2.8.-10. [학술연구] <손배피해기록> KEC지회 현장방문 및 피해기록
- 2018.2.12. [진상조사소위원회] “평화박물관 사태 관련 경과 알림” 보도자료 배포
- 2018.2.14. [연대활동] 연대기금 전달 / KEC 손배기금 모금 / KTX 승무지부 기금
- 2018.2.14. [회원활동] <손잡고편지> 설명절 인사 “손잡고 회원 여러분, 2018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18.2.14. [연대활동] 쌍용차 해고자복지 약속이행촉구 각계 선언운동에 참가 일간지 광고
- 2018.2.20. [법제도개선활동] <노동현장간담회> 손잡고 제30차 노동현장간담회 회의
- 2018.2.21. [진상조사소위원회] 손잡고 진상조사소위원회-시민사회 간담회
- 2018.2.21. [연대활동] 하이디스지회 투쟁보고대회
- 2018.2.21. [현장지원활동] 쌍용차해고자복지 투쟁선포 기자회견
- 2018.2.21.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17차 회의
- 2018.2.23. [연대활동] <1인시위> 파인텍지회 고공농성지지 스타플렉스 본사 앞 1인 시위
- 2018.2.23. [운영회의] 손잡고 제21차 운영위원회 회의
- 2018.2.26. [진상조사소위원회] 보도자료 “손잡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한홍구 교수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한 인권·노동·시민단체의 입장”
- 2018.2.27. [법제도개선활동] <토론회> “노동3권을 제한하는 소송남용에 대한 대책토론회”(발제, 토론참여)
- 2018.3.6. [연대활동] <공동기자회견> 동국대학교 청소노동자 해고 37일차! 사태해결 촉구 노동인권시민단체 합동기자회견
- 2018.3.8. [연대활동] <공동기자회견> 동국대학교 청소노동자 투쟁 삭발식 및 기자회견
- 2018.3.9. [연대활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18차 정기총회
- 2018.3.12. [운영회의] 손잡고 제22차 운영위원회 회의
- 2018.3.13. [연대활동] <1인시위>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영업소 1인시위
- 2018.3.15. [법제도개선활동] <노동현장간담회> 손잡고 제31차 노동현장간담회 회의
- 2018.3.16. [연대활동] 한광호열사2주기 “노조파괴 주범 현대자동차 규탄 유성기업아 산영동 결의대회” 추모문화제
- 2018.3.16. [연대활동] KTX승무지부 연대의 밤
- 2018.3.17. [현장지원활동] 쌍용자동차 지부 국가폭력-국가손배 관련 실무지원
- 2018.3.18. [현장지원활동] 쌍용차 사태해결 촉구 문화제 ‘워낭소리’
- 2018.3.19. [연대활동] 동국대학교 청소노동자와 함께하는 ‘벚꽃엔딩캠페인’ 릴레이
- 2018.3.19. [연대활동] 손잡고 운영위 쌍차지부 단식농성 현장방문

- 2018.3.21. [기고활동] 뉴스토마토 “쌍차 김득중 지부장의 네 번째 단식”
- 2018.3.26. [연대활동]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 2018.3.27.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제18차 회의
- 2018.3.28. [현장지원활동] KEC 손배소압류일지 “임금압류 30억도 서러운데, 최저임금 꼼수까지 씁니다”
- 2018.3.28. [현장지원활동] 유성범대위- “검찰 직권남용, 직무유기 5대 의혹 제기 기자회견”
- 2018.3.28. [현장지원활동] 유성기업- 검찰규탄 기자회견 “검찰의 보복조사 검찰은 과연 달라졌는가”
- 2018.3.28. [연대활동] <공동성명> SBS 뉴스토리 작가 일방해고 규탄 성명 “SBS는 불공정 관행을 멈추고, 해고된 작가들에게 사죄하라!”
- 2018.3.28. [현장지원활동]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문화제 및 민주노총결의대회
- 2018.4.2. [연대활동] <1인시위>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청와대 앞 1인시위
- 2018.4.3. [연대활동] <1인시위>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청와대 앞 1인시위
- 2018.4.4. [회원활동] <손잡고편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전원복직을 위한 단식 중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보내는 편지
- 2018.4.4. [캠페인활동] <의자놀이그만> 쌍용자동차 전원복직 릴레이 동조단식 제안 보도자료 배포
- 2018.4.4. [현장지원활동]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작업 착수 기자간담회
- 2018.4.5. [현장지원활동]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면회(녹색병원)
- 2018.4.5. [연대활동] <공동성명> “반인권적 무노조 신화 삼성은 각성하라!”
- 2018.4.6. [현장지원활동] <1인시위>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청와대 앞 1인시위
- 2018.4.7. [현장지원활동] 쌍용차 사태 해결 “우리가 김득중, 한상균이다” 쌍용차지부 문화제
- 2018.4.9. [기고활동] 오마이뉴스 “쌍용자동차 사장님, 세 아이 엄마인 저는 무섭습니다”
- 2018.4.9. [연대활동] <공동기자회견> “삼성 노조파괴 음모에 대한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 촉구” 기자회견
- 2018.4.10. [기고활동] 오마이뉴스 “29명 죽은 10년의 고통,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 2018.4.10.-4.30. [현장지원활동] “고공농성이 유죄가 되지 않게” 기아차비정규직 고공농성 형사선고 탄원서
- 2018.4.11.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제19차 회의
- 2018.4.11. [기고활동] 오마이뉴스 “쌍용차, 이제는 노동자와 함께 살아가는 길 택해주세요”

- 2018.4.12. [연대활동] <지엠범대위> 지엠횡포저지 및 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식
- 2018.4.12. [기고활동] 오마이뉴스 “‘쌍용차 전원 복직’은 모든 시민과 한 약속입니다”
- 2018.4.13. [기고활동] 오마이뉴스 “해고자들이 만든 티볼리로 '함께 사는 세상' 누비고 싶습니다”
- 2018.4.13.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손배소 트라우마연구 사전회의
- 2018.4.17. [법제도개선활동] 손잡고-금속노조위원장 면담
- 2018.4.17. [운영회의] 손잡고 제23차 운영위원 회의
- 2018.4.18. [연대활동] <추모제> 갑을오토텍지회 김종중 열사 추모
- 2018.4.19. [손잡고 논평] 유성기업 유시영 출소에 부처 노조파괴 사업장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논평 “사업주 솜방망이 처벌로는 노조파괴를 멈출 수 없다”
- 2018.4.20. [기고활동] 오마이뉴스 “소처럼 차를 끄는 노동자들... 사장님이 끝내야 합니다”
- 2018.4.20. [회계감사] 2017년도 손잡고 회계감사
- 2018.4.20. [모의법정]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실무간사 회의
- 2018.4.23. [기고활동] 오마이뉴스 “강산도 10년이면 변하는데, 해고자 고통은 '여전'합니다”
- 2018.4.23. [학술연구] <손배피해기록> 원종복지관 손배 당사자 면담 및 피해기록
- 2018.4.25. [연대활동] <공동기자회견> “황전원, 이동곤 사퇴 / 세월호 가족과 안산시민 모욕하는 자유한국당 혐오정치 중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2018.4.26. [기고활동] 오마이뉴스 “고객 위한 '청춘예찬' 페스티벌? 해고자의 '청춘'도 보듬어주세요”
- 2018.4.26. [연대활동] <공동성명>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인 인권은 말뿐인가? 실망만 안겨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분노한다”
- 2018.4.27. [회원활동] 제3회 손잡고 회원총회
- 2018.4.29. [모금활동] 노동법 알리기 및 토론회 등 시민대상 캠페인 사업 기부금품사용 세부내역 보고
- 2018.5.2. [모의법정]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공고게시
- 2018.5.2.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2015년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경찰은 세월호 가족과 시민에 대한 '괴롭힘소송' 즉각 멈추라”
- 2018.5.2.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세월호 유가족 - 경찰청 면담’
- 2018.5.3. [현장지원활동]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동부구치소 앞 집회
- 2018.5.4. [진상조사소위원회] 회비반환소송 재판 관련 1기 대표 면담
- 2018.5.8.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손배소 트라우마 연구 실무회의

- 2018.5.9. [법제도개선활동] <노동현장간담회>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제32차 회의
- 2018.5.9. [모금활동] 해피빈재단 모금함 후기등록
- 2018.5.11. [연대활동] <추모제> 하이디스지회 배재형 열사 추모제
- 2018.5.11. [현장지원활동] <1인시위>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 2018.5.12. [연대활동] 세월호 참사 피해증언대회
- 2018.5.12. [연대활동] 4.16재단 출범식
- 2018.5.13. [모금활동] 서울시 기부금품 사용 서류제출 마감
- 2018.5.14. [연대활동] 파인텍지회 고공농성현장 연대방문
- 2018.5.15. [연대활동] “세월호참사를 통해 본 언론보도의 문제점” 피해증언대회 참석
- 2018.5.16. [학술연구] <손배피해기록> 유성 산재 소송 참관 및 도성대 유성기업아산 지회장 인터뷰
- 2018.5.16.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제20차 회의
- 2018.5.17. [기고활동] 오마이뉴스 “죽은 동료의 산재승인을 취소하려는 회사”
- 2018.5.18. [현장지원활동]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5.18 문화제
- 2018.5.19. [연대활동] 광주5.18 노동자결의대회 및 망월동 묘역 방문
- 2018.5.23. [모의법정]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주최단 회의
- 2018.5.23. [현장지원활동] 쌍용자동차 경찰인권침해 대응회의
- 2018.5.23.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2차회의
- 2018.5.23. [모의법정]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문제출제위원회의
- 2018.5.24. [현장지원활동] 쌍용자동차 경찰인권침해 대응회의
- 2018.5.24. [학술연구] <손배피해기록> 금속노조 포항지부 DKC지회 방문 및 인터뷰
- 2018.5.25. [연대활동] 파인텍지회 고공농성 문화제
- 2018.5.28.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3차회의
- 2018.5.29. [현장지원활동] 쌍용자동차 경찰인권침해 대응회의
- 2018.5.29. [연대활동] <공동기자회견> “제주 배트남 어업이슈노동자 폭행사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촉구를 위한 동시다발 기자회견”
- 2018.5.30. [현장지원활동]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 2018.5.30. [현장지원활동] 원종복지관 사태 대응회의
- 2018.5.31. [현장지원활동] 쌍용자동차 국가폭력 대응 회의
- 2018.6.4. [모의법정]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출제문제 공개
- 2018.6.5.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제21차 회의
- 2018.6.5. [학술연구] <손배피해기록> 원종복지관 손배피해자 면담 및 피해기록
- 2018.6.6. [연대활동] <추모제> 박래전열사 30주기 추모식
- 2018.6.8. [현장지원활동] 쌍용자동차 경찰인권침해 대응회의
- 2018.6.8. [연대활동]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촛불문화제

- 2018.6.11. [모금활동] KB손해보험지부 방문 기부체결
- 2018.6.11.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제22차 회의
- 2018.6.12. [현장지원활동] 유성기업지회 손배소 대책회의
- 2018.6.12. [연대활동] <공동성명> “기아자동차는 여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강제 전적을 중단하라!”
- 2018.6.13. [운영회의] 손잡고 상반기 사업기획회의 제24차 운영회의
- 2018.6.14. [진상조사소위원회] 한흥구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회의
- 2018.6.20. [현장지원활동] 원종복지관 사태 대책회의
- 2018.6.26. [법제도개선활동] <노동현장간담회>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제33차 회의
- 2018.6.26. [연대활동] <공동성명> “기아차 여성 비정규직은 동네북이 아니다! 여성비정규직들이 일하던 곳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라!”
- 2018.6.27. [손잡고논평] ‘국가손배.국가폭력 피해 쌍용차 해고노동자 죽음에 대한 입장문’ “누가 해고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나”
- 2018.6.27. [현장지원활동] 쌍차 김주중열사 조문
- 2018.6.28. [현장지원활동] <추모제> 쌍차 김주중열사 추모제
- 2018.6.28. [현장지원활동]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의
- 2018.7.3. [현장지원활동] 쌍용자동차 故김주중 조합원 분향소 설치 기자회견
- 2018.7.3.-4. [현장지원활동] 쌍용자동차 김주중 열사 대한문 분향소 설치
- 2018.7.6.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시민사회단체대표단,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만나 쌍용차사태 등 적극적 해결 요청” 보도자료 배포
- 2018.7.9. [현장지원활동] 원종복지관 사태 대책회의
- 2018.7.11. [손잡고논평] 노동자에 대한 유성기업의 괴롭힘 소송을 규탄하는 논평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이 노동자에 가하는 ‘보복성 손배소송’을 전면 조사하라”
- 2018.7.11. [진상조사소위원회] 회비반환소송 2심선고 승소
- 2018.7.12. [현장지원활동] <공동기자회견> 7. 3.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극우 세력은 쌍용자동차 분향소에 대한 폭력·모욕행위를 중단하고 경찰은 이를 방관하지 말라!"
- 2018.7.16. [현장지원활동] 쌍용자동차 경찰인권침해 대책회의
- 2018.7.16.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이명박 경찰청’ 희망버스 댓글공작 고발 및 여론조작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
- 2018.7.16.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유성영동지회
- 2018.7.17. [법제도개선활동] <노동현장간담회>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제34차 회의
- 2018.7.18. [모의법정] 서면심사결과 및 본대회 대진표 공개

- 2018.7.18. [학술연구] <토론회> 원종복지관 사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원종복지관 노동인권 침해, 해결방법은 없는가”
- 2018.7.19. [홍보활동] MBC 스트레이트 인터뷰
- 2018.7.20. [진상조사소위원회] 회비지급청구소송 판결 내용 보고 보도자료 배포
- 2018.7.20.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유성아산지회
- 2018.7.20.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갑을오토텍지회
- 2018.7.23. [추모입장문] 故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 2018.7.24.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유성아산지회
- 2018.7.25.-7.28.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KEC지회
- 2018.7.30.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기아차비정규직지회
- 2018.8.7. [현장지원활동] 쌍용차범대위 기자회견 “쌍용차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10대 요구사항”
- 2018.8.7.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유성영동지회
- 2018.8.9. [모의법정]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법무부 시상후원 공문발송
- 2018.8.10. [법제도개선활동] <손배기자회견> 유성기업의 쟁의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추가청구를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 “노조파괴 사업장 유성기업의 손배청구는 보복행위다. 평택지원은 즉각 기각하라!”
- 2018.8.13. [모의법정]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국회 시상후원 서류제출
- 2018.8.14. [현장지원활동] 쌍용자동차지부 고 김주중 조합원 49제
- 2018.8.14. [운영회의] 손잡고 제25차 운영위원 회의
- 2018.8.18. [현장지원활동] 쌍용자동차지부 결제해지 문화제
- 2018.8.20. [손잡고논평] 양승태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기밀자료 유출 관련 논평 “양승태 대법원의 ‘노동3권’ 거래는 헌법유린이다”
- 2018.8.21.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희망버스 국가손배소 2심 선고 규탄 기자회견
- 2018.8.21. [현장지원활동] 유성기업 추가손배소 대응회의
- 2018.8.22.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공동논평
- 2018.8.22. [연대활동] <기자회견> 금천수요양병원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 2018.8.22. [모의법정] “파업과 집회에 투입된 진압장비 파손,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보도자료 배포
- 2018.8.23. [손잡고논평] 창조컨설팅 심종두, 김주목 형사판결에 대한 논평 “노조파괴 시나리오도 유죄다, 유성기업은 범죄를 중단하라!”

- 2018.8.25. [모의법정]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식
- 2018.8.26. [모의법정] “노란봉투 모의법정 ‘기존 판례를 뒤집으려는 노력에 가산’, 국회의장상 고려대팀” 보도자료 배포
- 2018.8.28. [손잡고논평] 쌍용차 사태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대한 논평 “이명박 청와대 지시, 쌍용차사태 책임자 ‘국가’는 국가손배 즉각 철회하라”
- 2018.8.28. [현장지원활동] <공동기자회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쌍용차 진압 보고서 발표에 따른 쌍용차지부-범국민대책위 입장발표”
- 2018.8.29. [현장지원활동] 쌍용자동차지부 국감대응 회의
- 2018.8.30. [현장지원활동] <공동기자회견> 쌍용자동차지부 가족대책위-경찰청 면담 기자회견
- 2018.8.31. [현장지원활동] <공동기자회견> “기아자동차는 파업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법원판결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2018.9.3. [기고활동] 오마이뉴스 ““현장 노동자와 함께하는 법률가” 꿈꾸는 예비법조인”
- 2018.9.5.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제23차 회의
- 2018.9.6.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공동성명,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 2018.9.6. [연대활동] <공동기자회견>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과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 2018.9.6. [학술연구] 쌍용차 국가폭력 가족 트라우마 연구 발표회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이런 해고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토론 참여
- 2018.9.11. [회원활동] <손잡고편지> 손잡고의 뜨거운 여름, 활동소식 전합니다
- 2019.9.11. [법제도개선활동] <노동현장간담회>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제35차 회의
- 2018.9.13.-14.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현대자동차지부
- 2018.9.14. [연대활동] <의견서연명>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
- 2018.9.17. [학술연구] <손배피해기록> 서라벌지회 손배당사자 면담 및 피해기록
- 2018.9.17.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DKC지회
- 2018.9.19.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현대자동차지부
- 2018.9.20.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현대중공업지부
- 2018.9.20. [학술연구] <손배피해기록> 울산과학대학 손배피해자 면담 및 피해기록
- 2018.9.21. [회원활동] <손잡고편지> 손잡고 회원 여러분, 올해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 2018.9.27. [연대활동]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처벌을 위한 신문광고 함께 만들기
- 2018.9.27. [연대활동] <문화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종결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는 촛불문화제
- 2018.9.28. [운영회의] 손잡고 제27차 운영위원회 회의
- 2018.9.28. [연대활동] <문화제> “현대기아, 불법파견 14년 이제 끝냅시다” 촛불문화제
- 2018.10.3. [연대활동] 파인텍지회 하루조합원 총회 “스타플렉스 김세권, 문재인 정부 약속지켜!”
- 2018.10.4.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기본권행사 가로막는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 발의 기자회견
- 2018.10.4. [법제도개선활동] <노동현장간담회>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제36차 회의
- 2018.10.4. [손잡고논평]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 환영한다”
- 2018.10.4. [현장지원활동] 유성기업 해고노동자 해고무효소송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 2018.10.12.-13.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전주택시 고공농성현장 방문 및 손배 피해자 면담
- 2018.10.15.-18.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쌍용자동차지부
- 2018.10.16. [연대활동] <공동성명>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발령 즉각 철회하라!”
- 2018.10.17. [현장지원활동] 유성범대위기자회견 “현대차 재벌과 국가권력이 자행한 ‘유성기업 노조파괴’ 이제 모두가 나서서 끝내야 합니다!”
- 2018.10.24.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KEC 3노조, 무노조
- 2018.10.25.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쌍용자동차지부 창원지회
- 2018.10.25.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한진중공업지회
- 2018.10.26. [연대활동] 한진중공업 김주익, 광재규 열사 15주기 열사정신계승제 “제15주기 김주익, 광재규 열사 정신계승제”
- 2018.10.31. [연대활동] <문화제> 해고규탄집회 “금천수요양병원 두번째 해고자 발생 반드시 복직한다!”
- 2018.11.6. [법제도개선활동] <노동현장간담회>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제37차 회의
- 2018.11.8.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기아차비정규직지회
- 2018.11.10. [연대활동] 전태일열사정신계승 2018전국노동자대회

- 2018.11.10. [연대활동] 파인텍지회하루조합원 공동행동
- 2018.11.13. [운영회의] 손잡고 제28차 운영위원회 회의
- 2018.11.15. [연대활동] 인권재단사람 후원의 밤
- 2018.11.16. [현장지원활동] 금속노조 KEC지회 'FIRE 불타오르네 바자회' 참여
- 2018.11.16.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KEC노동자 면담
- 2018.11.16.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KEC해고노동자 면담
- 2018.11.27. [기타활동] 성공회대 NGO 강의 학생방문, 손잡고의 활동이야기
- 2018.11.28. [연대활동] <공동기자회견> “한국잡월드와 고용노동부는 잡월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 2018.11.28. [현장지원활동] “노조파괴 범죄자 유시영 엄중처벌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 2018.11.29.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손배가압류 역학조사 현장방문-금속노조 간부 면담
- 2018.11.30.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연구팀-손잡고 점검회의
- 2018.12.3. [현장지원활동] <공동기자회견>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2018.12.3. [손잡고논평] 경찰청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의 ‘노조 책임전가’ 발언에 대한 규탄 논평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
- 2018.12.4. [현장지원활동] 유성범대위 기자회견 “유성기업 노조파괴 8년! 제3의 협력자 편파적 공권력 사용한 경찰은 사과하라!”
- 2018.12.5. [기고활동] 뉴스토마토 (박래군의 인권이야기)노동탄압에 나서는 정부를 걱정한다
- 2018.12.6. [연대활동] <공동기자회견> 파인텍 박준호, 흥기탁 굴뚝농성 390일! “408일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끝장투쟁 선포 기자회견
- 2018.12.10. [손잡고논평] 세계인권선언 탄생 70년,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논평 “정부는 노동권 실현을 위해 결단하라!”
- 2018.12.11. [연대활동] <비정규직100인대표단>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 100인과 만남시다” 기자회견
- 2018.12.12. [연대활동] <비정규직100인대표단> 청와대 관계자 면담 및 대통령 면담요청서 전달
- 2018.12.12. [연대활동] <조문> 태안 화력발전 비정규직 고 김용균님 조문
- 2018.12.13. [연대활동] <추모제> 태안 화력발전 비정규직 “24살 고 김용균님” 추모문 화제

- 2018.12.13. [운영회의] 손잡고 제28차 운영위원회 회의
- 2018.12.14. [회원활동] <손잡고편지> 2018년을 마무리하며 인사드립니다
- 2018.12.14. [현장지원활동] <공동성명>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유성노동자들에 대한 악의적 보도행태 즉각 중단하라!”
- 2018.12.14. [회원활동] <손잡고뉴스레터> 손잡지 제1호 발송
- 2018.12.17. [진상조사소위원회] 한홍구 교수가 제기한 명예훼손소송 종결에 대한 손잡고 운영위원회 입장문 “한홍구 교수는 독단과 전횡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 2018.12.18. [연대활동] <공동기자회견> “24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님의 유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과 직접 만납시다!”
- 2018.12.18. [연대활동] <공동기자회견> 박준호, 홍기탁 굴뚝농성 ‘408일을 넘길 순 없습니다’ 제사회단체 대표자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및 투쟁계획 선포 기자회견
- 2018.12.19. [연대활동] 민주시민언론상 시상식 참석
- 2018.12.21. [연대활동] <공동성명> “비극의 기록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파인텍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 2018.12.21. [학술연구] <손배피해기록>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방문 및 피해기록
- 2018.12.21.-22. [연대활동] <문화제> 비정규직이제그만, 문재인대통령 만납시다 비정규직촛불행진, 1박2일 문화제
- 2018.12.24. [연대활동] <문화제> 408+408 살인의 숫자를 멈춰라 스타플렉스 굴뚝농성 문화제
- 2018.12.27. [회원활동] <영화상영회> 다큐멘터리 <사수> 시민단체회원 공동상영회
- 2018.12.29. [연대활동] <문화제> 굴뚝으로 가는 희망버스 ‘땅으로’
- 2018.12.29. [연대활동] <비정규직100인대표단> 비정규직 고 김용균 범국민추모제
- 2018.12.31. [기타활동] 사무국 2018년 종무식



2018년 손잡고 감사보고

1. 업무감사보고

「손잡고 2019년 정기총회」 업무 감사 보고서

본 감사는 손잡고 2018년도 사업 활동에 대한 업무 감사를 시행하고, 다음과 같이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1. 감사 방법

업무 감사의 실시는 업무보고서 등 업무 관련 서류의 확인, 사무국에 대한 질의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 감사 평가

2018년 한 해 동안에도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한 노동자 피해 구제 및 권익 옹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 모금 활동, 피해자 지원 활동, 감시 활동, 캠페인 활동, 연대 활동, 언론 활동, 회원 활동 등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크게 지적할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정기총회 개최 시기를 정관상 규정(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에 맞추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019년에는 여러 활동위원회들에서 더욱 많은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무국 체계 정비도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19. 4. 23.

감사 김도형



2. 2018 회계감사 보고

운 영 성 과 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손잡고

(단위:원)

| 과 목 | 2018년 | |
|----------------|------------|-------------------|
| | 금 | 액 |
| I. 사업수익 | | 62,851,962 |
| CMS회비 | | 35,570,012 |
| 후원 | | 20,750,000 |
| 개인후원 | 1,950,000 | |
| 단체후원 | 18,800,000 | |
| 모금 | | 100 |
| 운영위원회후원 | | 6,100,000 |
| 기타사업 수익 | | 431,850 |
| II. 사업비 | | 27,156,570 |
| 법제도개선활동 | | 12,732,980 |
| 국가손배대응모임 | 429,680 | |
| 법제도개선사업 | 111,400 | |
| 노동현장간담회 | 462,000 | |
| 모의법정 | 11,729,900 | |
| 문화기획 | | 4,490,110 |
| 손잡고연극제 | 4,339,610 | |
| 영상제작 | 150,500 | |
| 학술연구 | | 2,746,680 |
| 손배피해기록 | 846,580 | |
| 손배실태조사 | 1,322,300 | |
| 토론회 | 577,800 | |
| 연대사업 | | 3,381,750 |
| 연대활동비 | 2,236,160 | |
| 의자놀이그만 | 117,260 | |
| 노동현장실무지원 | 1,028,330 | |
| 기타사업비 | | 2,878,600 |

| | | | |
|--------------------|-------------|------------|-------------------|
| | 운영회의 | 664,500 | |
| | 홍보비 | 2,206,400 | |
| | 발송비 | 7,700 | |
| | 회원사업 | | 926,450 |
| | 회원활동 | 340,300 | |
| | 총회 | 586,150 | |
| Ⅲ. 사업이익 | | | 35,695,392 |
| Ⅳ. 운영비 | | | 43,496,105 |
| | 인건비 | 24,282,600 | |
| | 단기인건비 | 1,028,500 | |
| | 보험공과료 | 2,130,130 | |
| | 복리후생비 | 1,168,720 | |
| | 여비교통비 | 19,180 | |
| | 통신비 | 241,745 | |
| | 세금과공과금 | 750 | |
| | 도서인쇄비 | 1,000 | |
| | 소모품비 | 1,949,130 | |
| | 지급수수료 | 1,657,190 | |
| | 기타운영비 | 8,617,160 | |
| | 판공비 | 2,400,000 | |
| Ⅴ. 운영손실 | | | 7,800,713 |
| Ⅵ. 운영외수익 | | | 61,657 |
| | 이자수익 | 60,937 | |
| | 잡이익 | 720 | |
| Ⅶ. 운영외비용 | | | 1,040 |
| | 잡손실 | 1,040 | |
| Ⅷ. 법인세차감전손실 | | | 7,740,096 |
| Ⅸ. 법인세 등 | | | 0 |
| X. 당기순손실 | | | 7,740,096 |

※ 과목 항목 정리

(1) 사업비 부문

- 1) 기타사업비 : 고정된 법제도개선활동, 문화기획, 지원활동, 연대활동 외 지출된 사업 관련 항목이 포함됩니다.
 - ① 운영회의 : 손잡고 사업계획을 위한 결정을 위해 월 1회 진행되는 운영위원회회의를 위한 진행비
 - ② 홍보비 : 상시적 사업홍보를 위한 메일링 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지출된 금액
 - ③ 발송비 : 기타 사업진행 과정에서 지출된 우편발송비

(2) 운영비 부문

- 1) 기타운영비 관련 : 기타운영비로 묶인 금액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① 업무추진비 : 행사비 외에 업무진행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 야근식사비, 단체 교통카드 충전 등에 사용된 금액
 - ② 사무실관리비 : 손잡고가 사무실을 위탁하고 있는 인권재단사람에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금액
 - ③ 회계관리비 : 2018년부터 분기별 정산보고를 비롯 회계관리를 위해 회계법인 대성삼경회계법인과 계약. 매월 지급한 금액.
 - ④ 소송금액반환 : 2018년 7월 평화박물관 측과의 회비반환소송 2심결과에 따라, 승소로 받은 금액 가운데 법률비용 일부를 반환함
- 2) 판공비 : 상임대표 활동비 지급
- 3) 복리후생비 : 2018년부터 활동가 심리상담 지원을 시작. 점심식사비 외에 심리상담을 위한 지출비를 복리후생비에 포함

(3) 기타

- 1) 운영외수익-잡이익 720원 : 건강보험에서 정산된 금액이 늦게 반영되면 환급금이자를 납부한 보험료를 깎아주는데 이 부분이 회계에서 잡이익으로 분류됩니다.
- 2) 운영외손실-잡손실 1,040원 : 5월 지방소득세를 원래 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낸 것으로 확인되어 회계에서 이 부분이 잡손실로 처리됐습니다.

재 무 상 태 표

2018년 12월 31일 현재

2017년 12월 31일 현재

손잡고

(단위:원)

| 과 목 | 2018년 | | 2017년 | |
|-----------------|-------|------------|-------|------------|
| | 금 | 액 | 금 | 액 |
| 자산 | | | | |
| I.유동자산 | | 71,342,011 | | 79,015,787 |
| (1) 당좌자산 | | 71,342,011 | | 79,015,787 |
| 보통예금 | | 71,337,611 | | 79,015,787 |
| 미수금 | | 4,400 | | 0 |
| (2) 재고자산 | | 0 | | 0 |
| II.비유동자산 | | 0 | | 0 |
| (1) 투자자산 | | 0 | | 0 |
| (2) 유형자산 | | 0 | | 0 |
| (3) 무형자산 | | 0 | | 0 |
| (4) 기타비유동자산 | | 0 | | 0 |
| 자산총계 | | 71,342,011 | | 79,015,787 |
| 부채 | | | | |
| I.유동부채 | | 1,916,600 | | 1,850,280 |
| 예수금 | | 18,660 | | 139,200 |
| 미지급비용 | | 1,897,940 | | 1,711,080 |
| II.비유동부채 | | 0 | | 0 |
| 부채총계 | | 1,916,600 | | 1,850,280 |
| 자본 | | | | |
| I.자본금 | | 0 | | 0 |
| II.자본잉여금 | | 0 | | 0 |
| III.자본조정 | | 0 | | 0 |
| IV.기타포괄이익누계액 | | 0 | | 0 |
| V.이익잉여금 | | 69,425,411 | | 77,165,507 |
| 미처분이익잉여금 | | 69,425,411 | | 77,165,507 |
| (당기순손실) | | | | |
| 당기 : 7,740,096원 | | | | |
| 자본총계 | | 69,425,411 | | 77,165,507 |
| 부채 및 자본총계 | | 71,342,011 | | 79,015,787 |

2) 회계감사 보고

2018년도 감사보고

손잡고의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표(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기간동안의 수입과 지출의 집행과 관리가 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손잡고의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내용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박병학





총회 안건 및 승인

1. 2018년 회계 및 업무감사 보고 승인

2. 2019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1) 2019년 주요 활동 목표 “손잡고의 하루를 잡아주는 손!”

- 입법활동 : 손배가압류 관련법 개정을 위한 활동
- 모금활동 : 손배가압류 관련 사회적 모금운동
- 지원활동 : 손배가압류 피해자 및 노동현장 지원활동
- 의제활동 : 손배가압류 관련 사회적 의제화(기고, 교육, 토론회, 공청회 등)
- 감시활동 : 손배가압류 현황조사 및 사례 기록
- 캠페인활동 :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에 대한 여론형성(공연, 전시, 1인시위 등)
- 회원활동 : 회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 회원배가운동
- 사무처 근무환경 개선 및 사무국 구성 확대

2) 2019년 주요 활동 목표에 따른 사업계획안

※ 활동목표 내 필요 시 사업계획 변경 및 신규사업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운영 위원회에 일임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① 입법활동

현재 손배가압류 관련해 20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환경노동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고, 다른 하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괴롭힘소송금지법’(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입니다. 두 법안 모두 2019년 국회에서 법안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토론회, 공청회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② 모금활동

안정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회원배가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캠페인 활동과도 적극 연계에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손잡고의 회원참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단체홍보도 함께할 것입니다.

그 외 사업비 확충을 위해 공모사업 등 사회적 재원을 끌어당기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③ 지원활동

2019년도 손배피해노동현장에 연대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현 단체 여건상 직접지원을 위한 모금활동이 어려웁니다. 따라서 성심수녀회와 같이 손잡고를 통해 피해가구에 직접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들을 적극 발굴하고, 협업을 제안해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④ 의제활동

노동현장간담회, 법제도개선위원회 등 활동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위원과 활동가가 적극 나서 기고와 홍보활동을 통해 손잡고와 손배소 현장 상황을 직접 알려내기 위한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⑤ 감시활동

2019년은 손배피해실태조사 발표와 더불어 2018년 이행하지 못한 손배현황집계 발표도 수행할 것입니다. 양대노총 사업장 소속이 아닌 피해사례까지도 집계 포함할 수 있도록 집계 전 언론과 SNS를 통해 광고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⑥ 캠페인활동

2019년 현재, 계획된 캠페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제3회 손잡고 연극제 준비 : 2020년 공연을 목표로 제3회 손잡고 연극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 올해도 모의법정은 계속됩니다. 5월 공고를 시작으로 본 대회는 8월(날짜 미정) 개최합니다.

- 여름 손잡고와 함께 맥주파티 : 회원배가를 위한 손배알리기 프로젝트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과 노동현장이 함께하는 자리이자, 손잡고 후원을 위한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 가을, 손잡고 인문학 강좌 : 노동법을 넘어 노동권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노동을 소재로 한 다양한 책과 저자를 소개하고, 이들과 책 이야기, 노동 이야기, 그리고 손잡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 겨울, 손잡고 노동현장과 함께 한 해 보내기 : 12월, 한 해 동안 애쓴 노동

권지킴이들과 한 자리에 모여 한 해를 보내고 새해 희망을 나눌 계획입니다.

⑦ 회원활동

- 회원총회 : 업무감사 지적에 따라, 향후 회원총회는 정관이 규정한 3월 이전에 개최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손깍지> : 정기 뉴스레터 <손깍지>를 매월 발행해 회원여러분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9년 손잡고 활동계획

| 항목구분 | 사업계획 | 시기 | 비고 |
|---------|-------------------|----------------|----------------|
| 모금활동 | CMS-회원배가활동 | 수시 | |
| | 공모사업 지원 | 수시 | |
| | 기타 | | |
| 캠페인활동 | 제5회노란봉투법 모의법정경연대회 | 2019. 5.1~8.31 | 정기사업 |
| | 손잡고와 함께 맥주파티 | 2019.7~8 | |
| | 제3회 손잡고연극제 | 2019.9~ | 2020년 목표 |
| | 손잡고 가을 인문학 | 2019.11 | |
| | 노동현장과 손잡고 | 2019.12 | |
| 법제도개선활동 | 노동현장간담회 | 월1회 | 정기사업 |
| | 법제도개선위 입법활동 | 미정 | |
| | 국가손배대응모임 | 수시 | 8월(진상조사결과발표1년) |
| 감시활동 | 손배현황발표 | 미정 | |
| | 손배실태조사 결과발표 | 2019.1.24 | |
| | 토론회 | 하반기 | 국가인권위 협업 |
| 연대활동 | 투쟁사업장지원 | 수시 | |
| | 기타(성명, 기자회견 등) | 수시 | |
| 지원활동 | 피해자 지원 | 하반기 | 모금활동 결과에 따라 변동 |
| | 지원 연계 | 요청 시 | 연계요청시 논의 후 결정 |
| 기고활동 | 손배가압류 관련 기고 | 수시 | |
| | 손잡고 운영위원 릴레이기고 | 수시 | |
| 회원활동 | 총회 | 2019.2 | 정기사업 |
| | 손잡고 뉴스레터 <손깍지> | 매월 | 정기사업 |

3. 2019년 예산(안) 보고와 승인

1) 전년도 이월자산 : 69,425,411원

2) 2019년 예산(안)

| 수입예산 | | | | 지출예산 | | | | |
|-------------|-----------|--------------------|----------------|-------------|-----------|--------------------|------------|-----------|
| 항목 | 세부항목 | 금액 | 내역 | 항목 | 세부항목 | 2019년(안) | 2018년 | |
| 이월 | | 69,425,411 | | | 인건비(단기포함) | 30,000,000 | | |
| 후원 | 회비 | 36,000,000 | * 회원 300명기준 | 운영비 | 인건비 외 운영비 | 15,000,000 | 43,496,105 | |
| | 후원 | 20,000,000 | 전년기준 | | 소계 | 45,000,000 | | |
| | 기타 | 1,200,000 | 전년기준 기타수익 등 추정 | | | | | |
| | 소계 | 57,200,000 | | | | | | |
| 사업 기금 | 사업수익 | 10,000,000 | 공모 등 | 사업비 | 모금활동 | 5,000,000 | 27,156,570 | |
| | 소계 | 10,000,000 | | | 캠페인활동 | 45,000,000 | | |
| | | | | | | 법제도개선 | | 5,000,000 |
| | | | | | | 감시활동 | | 3,000,000 |
| | | | | | | 연대활동 | | 3,500,000 |
| | | | | | | 회원활동 | | 2,000,000 |
| | | | | | | 발송비 | | 100,000 |
| | | | | | | 홍보비 | | 2,000,000 |
| | | | | | | 회의비 | | 1,400,000 |
| | 기타활동비 | 3,000,000 | | | | | | |
| | 소계 | 70,000,000 | | | | | | |
| | | | | 예비비 | | 21,625,411 | | |
| 수입총계 | | 136,625,411 | | 지출총계 | | 136,625,411 | | |

4. 감사 선임 및 운영위원 총원의 건

- 1) 감사 선임 : 회계감사 박병학 회계사와 업무감사 김도형 변호사의 연임을 승인하여 주시기 요청합니다.

- 2) 운영위원 총원 : 손잡고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을 총원하고자 합니다. 승인하여 주시기 요청합니다.

5. 정관개정안

1) 개정 사유 : 손잡고는 2019년 9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서울시에 기부금 영수증발급민간단체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정관개정이 필요합니다.

2) 개정조항

제3장 기관 > 제4절 대표, 감사, 사무국 등 > 제23조 [대표]

⑤항 신설

▶ [개정안] 대표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4장 재정 > 제28조 [예산과 결산] > 2항

② 대표는 손잡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 [개정안] 대표는 손잡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4장 재정 > 제29조 [수입]

문구 일부 삭제 : 이 경우,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하는 모금의 경우, 정관을 만들 당시 노란봉투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포함한 문구이므로, 현재 노란봉투캠페인 모금이 종결되었기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삭제를 요청

손잡고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단,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하는 모금은 사업비로 하되, 운영비는 별도 모금으로 충당한다.

▶ [개정안] 손잡고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3) 부칙 :

이 정관 중 개정조항은 2019. 4. 25. 총회에서의 의결이 있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7. 기타 안건

[첨부자료1. 손잡고 정관]

손잡고 정관

2016. 4. 2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약칭 "손잡고")'라 한다.

제2조 [목적]

손잡고는 노동쟁의 등을 원인으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손배 가압류'라 한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동자 피해구제와 관련 법제도의 개선, 시민모금과 사회 여론형성 등 노동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와 다양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손잡고는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유로운 개인과 단체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

① 손잡고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손배 가압류와 업무방해죄 관련 법제도 개선 사업
2. 손배 가압류 관련 모금
3. 손배 가압류 관련 피해자 지원 사업
4. 손배 가압류 관련 사회 의제화 사업
5. 노동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제고
6. 기타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손잡고는 제2조의 목적과 위 ①항의 사업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제5조 [소재]

손잡고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 ① 손잡고의 목적에 동의하여 제안자(발기인)로 참여하거나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이나 단체는 회원이 된다.
- ② 회원 가입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총회를 통하여 손잡고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2. 손잡고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손잡고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후원금 또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자격 상실, 탈퇴]

- ①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손잡고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기관

제1절 총회

제10조 [지위]

총회는 손잡고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가 소집한다.

제11조 [구성]

총회는 대표와 운영위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의 방법은 문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④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명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총회는 출석한 운영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참석 회원들의 의결로써 의장을 선출한다.

제13조 [권한과 의결사항]

- ① 총회는 손잡고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대표와 감사, 운영위원의 선출 및 해임
 3. 결산,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4. 손잡고의 해산
 5. 기타
- ③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 ④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13조의 2 [임원의 해임] 대표, 감사,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손잡고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손잡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까지 손잡고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관이다.

제15조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대표와 5인 이상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③ 대표가 운영위원장이 되며, 공동대표를 두는 경우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으로 1인을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 ④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며, 운영위원장의 결위 또는 사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운영위원회 내에 활동위원회,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⑥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임기]

- ①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월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내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및 의결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절 활동위원회

제20조 [지위]

- ① 손잡고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위원회를 둘 수 있다. 활동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기구이다.
- ② 각 활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각 활동위원회는 손잡고의 목적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 ④ 활동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활동보고와 계획을 제출한다.

제21조 [구성]

- ① 활동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활동위원회는 기금관리위원회, 소통위원회, 법제도개선위원회 등 손잡고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임기]

활동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절 대표, 감사, 사무국 등

제23조 [대표]

- ① 대표는 손잡고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2인 이상의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 ③ 공동대표는 각자 손잡고를 대표한다. 대표가 결위 또는 유고시에는 운영위원 중 연장자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의 2 [감사]

-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제23조의 3 [사무국]

- ① 손잡고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종사자를 포함한 구성원과 조직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정한다.
- ② 사무국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24조 [자문위원]

손잡고는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인사와 단체를 자문위원으로 두어 손잡고의 활동에 대한 협력과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제25조 [지역조직 등]

- ① 손잡고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조직 또는 회원모임을 둘 수 있다.
- ② 지역조직 또는 회원모임의 조직과 구성은 내규로 정한다.

제26조 [부설기관]

손잡고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27조 [회계 연도]

손잡고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예산과 결산]

- ①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 ② 대표는 손잡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29조 [수입]

손잡고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단,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하는 모금은 사업비로 하되, 운영비는 별도 모금으로 충당한다.

제5장 해산

제30조 [해산 사유]

손잡고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31조 [해산 절차]

- ①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2조 [잔여 재산의 귀속]

손잡고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손잡고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6장 보칙

제33조 [준용 규정]

-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 ②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16. 4. 25. 개정]

1. 이 정관 중 개정조항은 2016. 4. 25. 총회에서의 의결이 있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첨부자료2. 20대국회 발의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5157 |
|----------|------|

발의연월일 : 2017. 1. 18.

발 의 자 : 강병원·남인순·김영주

유승희·문미옥·어기구
신창현·박찬대·김병관
이원욱·서영교·윤후덕
김현권·소병훈·전해철
이철희·권미혁·박남춘
박광운·이용득·박홍근
송옥주·박 정·임종성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을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고 있어,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같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 평화적인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이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계약자유 원칙으로 대변되는 「민법」의 원리 대신에 실질적인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의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간의 거래의 자유를 수정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제33

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이 행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사건에 있어서 민사적 원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법과 노동사건의 사회법적인 특수성을 부정하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음.

한편,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3조의 취지상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음.

따라서 파업권의 보장과 재산권의 보호라는 양 측면의 비교형량과 더불어 기업 활동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원칙,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집단적 행동에 대하여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헌법」상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제1항)은 개별근로자 및 그 단결체가 이를 향유하나, 개별근로자들은 법의 규정에 따라 그들의 단체인 노동조합을 통하여 쟁의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

는 개별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 집단 그 자체의 통일적인 행동으로서 집단적인 행위임. 이는 쟁의행위가 통상 노동조합의 결의와 지시를 기초로 통일적 행동으로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실태에도 부합함.

쟁의행위는 그 성질상 일상적인 업무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시켜 쟁의노동관계라고 해야 할 특수한 관계를 노사 사이에 만들어 내며, 쟁의행위 국면에서는 일상적 노동관계를 전제로 한 개별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의무와 직장규율의 전제되는 기반 그 자체가 결여되게 되고, 이러한 쟁의행위의 특수한 성격은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는 물론 어떠한 이유로 그 정당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사실로서 존재함.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자마자 쟁의노동관계를 모두 일상적인 노동관계의 기준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규율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태도임.

노동조합의 투표 등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총의로 형성된 경우 사용자는 단결승인의무를 기초로 노동조합의 총의를 존중해야 하며,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누가 그것을 지도하고 누가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는가를 추궁하여 단체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단결자치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할 것임. 조합임원과 일반조합원의 각 행위는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 행위인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노동조합이 행하는 쟁의행위의 단순한 일개 구성부분으로서만 평가되어야 마땅함.

따라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

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이탈한 개별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신원보증은 피고용인이 고용 후 고용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3자가 약속하는 것임. 신원보증은 근로(고용)계약에 부수되는 일종의 보증계약이라는 점에서 정의행위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정의노동관계라고 하는 특수한 관계에 돌입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신원보증인 제도의 취지와 배치됨.

더욱이 노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신원보증인에게 노동조합의 집단적 행동인 정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까지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제3자인 보증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것임.

따라서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또는 정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

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라. 노동조합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배상액 제한

노동조합은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요적 기구이자, 사실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주체이며, 다른 노동권의 행사를 위한 실질적인 담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헌법 실현적이고 기본권 보장적인 기구인 노동조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물적 토대가 필수적임.

그런데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청구됨으로 인하여 여러 노동조합의 재정이 위기 상황에 처하거나, 심할 경우 노동조합 그 자체가 와해되거나 붕괴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 이런 상황과 위협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존립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의 상한선을 법률에 규정한 영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조합원 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에도 사업계속의 불가능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

업수당을 기준 이하로 함으로써 사용자의 수당지급의무를 경감하고 있는바 이는 노사관계의 계속성과 상호관련성에서 비롯된 것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계속적 노사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마. 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

「민법」 제765조 및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법원이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쟁의행위의 경우에도 시장상황, 사업의 규모 등에 따른 위험부담은 본래 경영자가 부담하고 있던 것이므로 불법과업임을 이유로 이

를 전부 노동조합 측에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음.
또한 정의행위 원인과 경위, 배상의무자의 경제적 상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정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일탈한 개별적인 행위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정의행위 등의 원인과 경위, 사용자 영업의 규모, 시장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유무,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각 당사자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損害賠償 請求의”를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法에 의한 團體交渉 또는 爭議行爲로”를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라도 그것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손해배상액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쟁의행위 등의 원인과 경위

- 2. 사용자 영업의 규모, 시장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 3.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유무
- 4.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 5.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정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第3條(損害賠償 請求의 제한) 使用者는 이 法에 의한 團體交渉 또는 爭議行爲로 인하여 損害를 입은 경우에 勞動組合 또는 勤勞者에 대하여 그 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 <단서 신설></p> <p style="margin-top: 20px;"><신 설></p> <p style="margin-top: 20px;"><신 설></p> | <p>제3조(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의----) ① -----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p> <p style="margin-top: 20px;">----. 다만,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margin-top: 20px;">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라도 그것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margin-top: 20px;">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p> |

<신 설>

<신 설>

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3조의2(손해배상액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수, 조합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쟁의행위 등의 원인과 경위
2. 사용자 영업의 규모, 시장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3.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의무
4.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5.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정

[첨부자료2. 20대국회 발의 '괴롭힘소송금지법']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5857 |
|----------|-------|

발의연월일 : 2018. 10. 4.

발 의 자 : 박주민.김해영.추미애

정동영.서영교.박찬대

박 정.노웅래.윤소하

서형수.이정미.윤준호

안호영.강병원.맹성규

최재성.김철민.서삼석

송기헌.표창원.이 훈

채이배 의원(22인)

제안이유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약칭 ‘SLAPP’)은 통상 시민의 공적 참여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정부, 단체 및 개인)가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함. 이는 재판청구권을 남용하여 시민의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목적과 효과를 가져오는 소송으로서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그 제한을 위한 입법, 사법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이러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강정마을,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세월호 범국민대회,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 광우병대책회의(2008년), 민중총궐기, 유성기업 등에서 국가에 의한 청구액만 62억 5,969만원에 이르고 그로 인한 국민의 재산적, 정신적 고통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

이에 이러한 소송을 제한할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에서도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대법원 법원행정처 의뢰로 2017년 4월에 민사소송법학회에서 제출한 ‘전략적 봉쇄소송과 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소송의 제한을 위한 법률안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었음.

다만, 국내에서 주로 문제되는 소송 유형은 국가가 공적 이슈에 대하여 진행된 집회·시위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사용자가 노조의 파업 등 노동기본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청구를 제기하는 유형임. 따라서 이런 소송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려면 소송의 조기종결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고, 위 유형의 소송이 제한 대상 소송에 포함되어야 하고 가압류청구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 절차적 제한이 필요하며, 형식적인 승소가능성 외에 소송의 ‘괴롭힘’ 목적이 확인될 경우에 조기종결을 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실질적 방안을 종합하여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함.

이에 제정안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의뢰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한계를 수정·보완함.

주요내용

가. 기존의 ‘전략적 봉쇄소송’ 개념을 우리 현실에 맞게 ‘괴롭힘소송’으로 정의하고 보호대상을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구체화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괴롭힘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위한 별도의 심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 다. 괴롭힘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별도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본안청구 외에 가압류신청이 괴롭힘소송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가압류절차의 특칙을 두어 가압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6조).
- 마. 괴롭힘소송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부담에 관한 특칙을 두어 괴롭힘소송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7조).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축시키는 괴롭힘소송의 제기를 금지하고 이를 통하여 공적인 중요성을 갖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괴롭힘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괴롭힘소송”이란 공적 중요성을 갖는 사안에 관하여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행사한 개인, 노동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를 피고로 하여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데에 실제적인 목적이 있는 민사소송을 말한다.

2. “공적 중요성을 갖는 사안에 관하여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행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에 의한 공적 절차에서 행하여진 진술 또는 제출된 서면

나. 공공기관에 의한 공적 절차에서 심리, 심의, 검토되는 사안에 관하여 행하여진 진술 또는 서면

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

라. 공적 중요성을 갖는 사안에 관하여 행하여진 진술, 서면 또는 집회에서 의 진술, 행위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괴롭힘소송에 대한 각하신청 및 재판) ① 법원은 제기된 소송이 괴롭힘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다

만, 괴롭힘소송을 제기한 자가 승소가능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송의 주된 목적이 상대방에 대한 보복 또는 괴롭히기로 인정되거나 소제기로 인한 기본권 행사의 현저한 위축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의 각하 여부에 관한 재판은 별도의 심문기일을 정하여 심문을 진행한 후 신속하게 결정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까지 증거조사를 포함한 본안의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4조(즉시항고) 제3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 또는 각하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조(반소) ① 피고는 원고의 소송이 괴롭힘소송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반소가 제기되면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본소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6조(가압류에 대한 특칙) ① 법원은 가압류신청에 기재된 당사자 및 피보전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 및 기관의 장이 개인, 노동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가 행한 제2조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채권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채권

3. 그 밖에 제2조제1호에 따른 괴롭힘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건

② 채무자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 전까지 가압류신청이 괴롭힘소송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재판은 제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7조(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에 관한 특칙) 법원은 제3조, 제5조, 또는 제6조의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피고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손잡고 자료집

손잡고 제4차 회원총회 자료집

발행일 2019. 04. 25.

발행처 손잡고(대표 : 배춘환)

담당 윤지선 활동가 02-725-4777 sonjabgo47@gmail.com

Copyright ©손잡고, 2019

대표전화 02-725-4777

홈페이지 www.sonjabgo.org
